

제2023-54호 2023년 6월 15일(목)

人



보

#### 시정지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발행인: 여수시장 ■ 발행소: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ul><li>여수시 고/</li></ul>	 시	제2023-259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o 여수시 <i>고/</i>	시	제2023-264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6
이 여수시 고/	시	제2023-265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8
o 여수시 <i>고/</i>	시	제2023-26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9
<ul><li>여수시 고/</li></ul>	시	제2023-267호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10
공 고	<u></u>			
o 여수시 공	고	제2023-1785호	화장동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1
o 여수시 공급	ュ	제2023-1786호	남산동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5
o 여수시 공급	卫	제2023-1788호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9
o 여수시 공급	ュ	제2023-1795호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예정시항 통지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3
o 여수시 공급	고	제2023-1798호	(긴급)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1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정정)	36
이 여수시 공급	고	제2023-1799호	(긴급)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2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 공고(정정)	85
o 여수시 공급	고	제2023-1800호	(긴급)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3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 공고(정정)	134
<ul><li>여수시 공급</li></ul>	17	제2023-1801호	도로지정 공고[오천동 105번지]	183
o 여수시 공	고	제2023-1803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기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185

회				
람				

#### 여수시 고시 제2023-259호

####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 6. .

여 수 시 장

-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암모니아 저장탱크 조성사업
-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남해화학(주) 여수공장 대표 하형수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384(낙포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암모니아 저장탱크 증설로 회전율 개선 및 노후된 저장탱크를 개방검사하여 재해예방을 위함

나. 사업의 개요: 저장 및 공급 공장증설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여수시 낙포동 394-1번지 일원

나. 면 적: ┌기정 : 8,935 m²

└변경 : 11,965 m² 증) 3,030 m²

5. 사업시행기간(변경): \_ 기정: 2021.12.16..~2023.12.30.

└ 변경: 2021.12.16.~2024.12.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붙임
-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 가스공급설비 결정 변경 조서

	도면				면 적(m²)		최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5	가스공급 설비	여수시 낙포동 394-1번지외 58필지 여수시 낙포동 323번지외 36필지	8,935	증) 3,030	11,965	여고2021-545호 2021. 12.16	

#### ■ 가스공급설비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5	가스공급설비	· 기정 면적 : 8,935㎡ · 변경 면적 : 11,965㎡	· 탱크 상세설계 변경으로 공사계획변경에 따른 면적증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mark>변경</mark>)

n) =	소 기	대 지	l 11l	지	지 적	신청면적	소 유 자		- vil
번호	시	동	지 번	목	$(\mathrm{M}^2)$	$(\mathrm{M}^2)$	주 소	성 명	비고
1			394-1	장	794 _	11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2			442-2	잡	164 164	164 164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3			442-3	잡	175 175	175 175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4			442-4	잡	175 175	175 175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5			442-5	잡	43 43	43 43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6			442-6	잡	360 360	171 36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7			446-6	장	87 -	87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8			451-2	장	277 _	277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9			451-3	장	85 -	61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10			451-4	장	14	14 _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11			451-6	장	357 -	88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12			451-10	도	7 7	<b>7</b> 7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13			451-11	장	1,586 -	1,586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14	여수	낙포	451-12	구	48 48	48 48		국토교통부	
15			451-18	도	39 39	39 39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16			452	장	700 -	700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17			452-1	대	33 33	33 33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18			452-2	구	42 42	<b>42</b> 42		국토교통부	
19			453	장	42	42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20			453-1	대	254 254	254 254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21			454	잡	621 621	563 62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22			455	잡	522 522	415 522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23			456	잡	291 291	2 21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24			613-2	장	2,748 -	22 _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25			682	장	579 —	433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26			682-1	전	969 969	6 345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27			682-2	구	228 228	172 228		국토교통부	

	소 기	대 지		지	지 적	신청면적	소 유 자		
번호	시	동	지 번	목	$(\mathrm{M}^2)$	$(\mathrm{M}^2)$	주 소	성 명	비고
28			686-1	장	517 -	71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29			718	잡	572 572	12 43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30			720	전	1,203 1,203	168 65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31			721-2	전	774 774	1 246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32			722	장	905	352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33			722-1	전	297 297	117 297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34			723-1	장	347 -	190 _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35			723-2	장	1,971 -	433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36			723-3	대	70 70	51 7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37			723-4	전	69 69	69 69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38			724	장	34	14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39			725	장	179 -	20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40			726	장	263 -	255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41	여수	낙포	727	장	281 -	135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42	91	コエ	728	장	274	274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43			729-1	장	288	17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44			730	장	132	132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45			731-1	장	202	194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46			732-2	장	294	61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47			1243-1	장	270 _	192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48			1243-3	구	3 3	3 3		국토교통부	
49			1243-4	구	3 3	3 3		국토교통부	
50			1243-5	구	92 92	54 67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51			1243-6	구	116 116	61 84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52			1244	도	618 618	113 17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53			1245	장	28 -	28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54			1245-1	구	2 2	2 2		국토교통부	
55			1246	장	119 _	92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11) ÷	소	대 지	l -11	지	지 적	신청면적	소 유 자		
번호	시	동	지 번	목	$(M^2)$	$(M^2)$	주 소	성 명	비고
56			1247	장	17 -	17 _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57			1262-11	장	82 -	59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58			1262-12	구	4 4	4 4		국토교통부	
59			1262-20	도	198 198	111 13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60			323	장	457,280	- 6,003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61	여수	낙포	440	잡	_ 258	- 6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62			441	잡	209	- 64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63			442-1	잡	92	- 42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64			457	잡	238	_ 128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65			458	잡	_ 278	_ 16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66			719	잡	_ 221	- 13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해화학(주)	
		계(59필 계(37필	<mark>지</mark> ) [지)		21,464 466,568	8,9 <mark>35</mark> 11,965			

#### 여수시 고시 제2023-264호

####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 6. .

여 수 시 장(인)

-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공장증설용지 조성사업
-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GS칼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허세홍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바이오부탄올 생산시설 및 지원시설 증설 부지 조성

나. 사업의 개요: 공장부지 조성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여수시 적량동 1257-1번지 일원

나. 면 적: ┌기정 : 132,683.0 m²

└변경 : 127,480.2㎡ 감) 5,202.8㎡

5. 사업시행기간(변경): \_ 기정: 2016. 9. 1.~2024.12.31.

└ 변경: 2016. 9. 1.~2027.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게재생략
- 7.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구분			구성비	비고		
	Tゼ	기 정	j	변 경	변경후	(%)	비고
	합 계	132,683.0			132,683.0	100.0	
공업	소계	132,683.0	감)	5,202.8	127,480.2	96.1	
지역	일반공업지역	132,683.0	감)	5,202.8	127,480.2	96.1	
녹지	소계	_	중)	5,202.8	5,202.8	3.9	
지역	자연녹지지역	_	증)	5,202.8	5,202.8	3.9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기 정	(m') 변 경	용적율	결정(변경)사유
_	적량동 1257-1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132,683.0	127,480.2	350	• 구역계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_	적량동 1269-1번지 지선	자연녹지지역	_	5,202.8	100	(공업지역 → 녹지지역)

-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해당없음
- 9. 국 · 공유지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해당없음
- 10.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해당없음
-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고시 제2023-265호

##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1. 사업의 목적: 채소재배
- 2. 사업의 내용: 개간 신청지(임야)를 전으로 조성
- 3. 사업의 구역
  - 위 치: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산265번지
  - 지적면적: 679 m²
  - 개간면적: (<mark>당초) 599m²</mark> (변경) 543m²
- 4. 사업비: (당초) 950,000원 (변경) 960,000원
- 5. 사업예정기간: (당초) 2021. 11. 23. ~ 2023. 6. 30. (변경) 2021. 11. 23. ~ 2024. 6. 30.
- 6. 사업의 효과: 채소재배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 7. 사업시행자: 박\*\*[여수시 신월로 686, 10\*동 30\*호(국동, 대주아파트)]

2023. 6. 13.

여수시 고시 제2023-266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점용·사용	점용·사용	점용·사용	저요 !!요 기기	피 승 인 자			
(승인일)	장소			[ - 설명·사용 기신	주 소	성 명	고	
2023–30 (2023. 6. 13.)	여수시 남면 심장리 312번지 일원	어촌뉴딜 선도사업 (소우실포항) 시설공사	1,672.71 (준설, 부대공)	'23. 6. 13. ~ '28. 6. 12.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2023. 6. 14.

여수시 고시 제2022-267호

##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승인번호	매립면	허취득자	매립목적	면적	٥ì	치	시행기간	매립예정지 토지이용
(승인일)	주 소	성 명	매립목적	(m²)	위	<i>^</i>	(착수 및 준공 예정기간)	도시이용     계획
2023-1 ('22. 5. 11.)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장 (섬자원 개발과)	돌산읍 두룽개항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	161	평사리 2	돌산읍 93-9번지 !원	'23. 6. ~ '23. 10.	월파방지시 설 설치에 따른 도로 확장

2022. 6. 15.

여수시 공고 제2023-1785호

### 화장동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화장동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 CCTV 설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 1. 행정예고내용 : 화장동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2. 설치목적
  - 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 3.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년 6월 14일 ~ 7월 5일(21일간)

#### 5. 설치내역

가. 설 치 명 : 화장동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 방범용 CCTV 설치

나. 시 행 청 :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라. 설치관련 정보

구 분	설치 예정지	설치대수	운영시기	비고
방범용 CCTV (화장동)	여수시 화장동 800, 801, 802번지	CCTV 4대	2023년 7월 5일 이후 운영	

####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기간 내에 여수시청 도시계획과(2061-659-401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여수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팩 스 : 061)659-5833(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홈페이지 주소: http://www.yeosu.go.kr (바탕화면 → 고시/공고)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 위 치 도





## '화장동 환경 디자인 인심거리 조성시업 방범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화장동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 방범용 CCTV 설치
	성명
의견제출자	주 소
	연락처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 제출내용)

화장동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3-1786호

### 남산동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남산동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 CCTV 설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 1. 행정예고내용 : 남산동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2. 설치목적
  - 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 3.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년 6월 14일 ~ 7월 5일(21일간)

#### 5. 설치내역

가. 설 치 명 : 남산동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 방범용 CCTV 설치

나. 시 행 청 :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라. 설치관련 정보

구 분	설치 예정지	설치대수	운영시기	비고
방범용 CCTV (남산동)	여수시 남산동 1022번지	CCTV 2대	2023년 7월 5일 이후 운영	

####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기간 내에 여수시청 도시계획과(2001-659-401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여수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팩 스 : 061)659-5833(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홈페이지 주소: http://www.yeosu.go.kr (바탕화면 → 고시/공고)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 「남는 환경 디자인 인심거리 조성시업 방범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남산동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 방범용 CCTV 설치
	성 명
의견제출자	주 소
	연락처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 제출내용)

남산동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3-1788호

#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연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6. 13.

여수시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신분 (기간제근로자)	채용예정부서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교통유발부담금			2023. 7. 17. ~ 2023. 8. 25.(6주)
시설물	교통과	5명	
실태조사			(09:00 ~ 18:00 / 1일 8시간, 월~금)

보수	기타
일 83,040원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생활임금 일 6,080원 포함)	「근로기준법과」「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름

# 2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3. 6. 13.(화) ~ 2023. 6. 23.(금) (10일간)

나. 접수기간 : 2023. 6. 14.(수) ~ 6. 23.(금) 18:00까지(근무시간 내)

- 다. 접 수 처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 교통과(교통행정팀)
-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전자우편(qkrdmswls49@korea.kr) 접수
  -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접수 후 확인 요맹(☎061-659-4127)

# 3 직무기술

주요 업무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위한 시설물 실태조사 ○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및 서류 취합
필요 역량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 (직무역량) - 교통유발부담금 이해 및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의식
필요 지식 (개인역량)	○ 친절한 시민응대 ○ 현장조사업무 경력 및 지역현황에 밝은자

	관련분	야 : 현장조사, 시설물 현장 조사 등
응시	자격	○ (공통자격)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접수일 까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자
	경력	○ 해당없음(단, 면접 점수가 동일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실태조사원 근무경력자 우대)
	학위	○ 해당없음
우대요건		<ul> <li>○ 사무 프로그램 활용 능력 (서류전형 우대)</li> <li>- 5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li> <li>- 3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ITQ(2과목 이상)</li> </ul>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 4 채용분야 가산

구분	기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서류, 면접 각각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서류, 면접 각각 적용)	의사상자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분야별 우대요건, 자격증 소지자	직무기술서에 따름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

## 5 응시제한

가.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회피하여 공정한 채용시험을 방해 하는 등 비정규직 채용 응시제한을 받은 자(해당 응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응시 제한)

##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서면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6. 28.(수) 홈페이지공고 및 개별 통보

\* 단, 응시인원이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소수점은 올리며 전부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점수	4점	4점 8점 12점 16점 20점					
	4개 평가 지표 중	4개 평가 지표 중	4개 평가 지표 중	4개 평가 지표 중	4개 평가 지표		
내용	어떤 것도 잘	1개가 명확히	2개가 명확히	3개가 명확히	모두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드러남	드러남	드러남	드러남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23. 6. 30.(금) 15:00 (예정) \* 일정 변동 시,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23. 7. 5.(수)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라. 면접시험 평정표

평 가 항 목(5개항목)	점 수	비고
계	50점	
가.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 ※ 면접시험 시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 서류전형 심사점수와 면접 심사기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 7 제 출 서 류

-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1부
-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 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라.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기준으로 생년월일 및 현재 주소가 나오게 발급)
- 마. 시청 내 공직자 찬인척 확인서 1부

(시청 내 공직자 찬인척 관계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 또는 회피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 바. 자격증명서 각 1부(원본 제시,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 컴퓨터 관련 자격증 포함 제출
- 사.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 경력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 (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 경력(자격) 인정안함
  - ※ 양식은 우리 시 홈페이지 www.yeosu.go.kr 에서 내려 받아 작성 가능함

## 8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스스로 기재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 선발을 위해 여수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해당 채용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해당 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수시 비정규직 채용 응시에 제한됩니다.
- 라.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되 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전 기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된 날의 14일 이후부터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교통과 교통행정팀(※ 061-659-412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원서 1부.

-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3. 경험 및 경력기술서 1부.
- 4.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1부.
- 5.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관계 확인서 1부.

### 【붙임 1】

# <u>응 시 원 서</u>

채용분야			접=	수번호	채용담당	당자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지-	원직무			
현 주 소	도로명주소 박	번호 앞까지민	: 기재(동	호수 등 세투	-내역은	미기재)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가점항목		□ 취	업지원대	상자 □ 의사	-상자		
2. 자격사항 *작무		'전문자격, 국기	구공인 민건	<i>!자격을 기입</i>			
자격증명	]	발급기	기관		취득	일자	
3. 경력사항 * <sup>직무</sup>	리면 경력사항:	<i>만 기입</i>					
구분	소속조직	역학	할	활동기	간	활동내	역
□경험 □경력							
□경험 □경력							
□경험 □경력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	에 기재한 사회	항은 사실과	다름이 '	없음을 확인	합니다.		
					L 1	<u>년</u> 월	일
			지	원 자 :	(	(서명 또는	= 인)
					여	수시장	귀하

## 응시원서 등 제반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뒷면>

- 1.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은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 2.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 3. '제반서류'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 작성요령 】

- ① **응시원서**: 접수번호를 제외하고 인적사항은 필수로 기재하되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며 응시자 이름과 (인) 부분에 서명하여 제출
  - \* 연 락 처 : 상시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 \* 주요경력: 근무경력
- ② 이력서 : 인적사항 및 해당사항 전부 입력
- ③ 자기소개서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④ 경험 및 경력기술서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동의 체크 및 본인 서명
- ⑥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 : 친인척 기준을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입
- (※)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 【 붙임서류 】

- 1.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생년월일 및 현주소만 나온 자료)
- 2. 경력증명서 각 1부(경력보유자, 경력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3.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제시, 자격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 붙임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 【붙임 2】

# 이력서

(1쪽)

<필수>							
성 명	(한글)						
주 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	[화)		
근 그시	전자우편						
	회사명	담	당 업무(직무내용)		근무	기간(연, 월)	
주 요					년	월 ~ 년	월
경력사항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Ā	취 득 일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자격증				(	년	월 취득)	
및 특기사항	(기타실적, 능력 등)						
	장애종별	<u> </u>	디디		장	애인등록번호	
장애인 여부							
취업대상자 및	취업지원대 (보훈번호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당법」상 		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상
저소득층 여부							

<sup>※</sup>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여부는 해당항목에'○'로 표시 후 증빙자료 첨부

# 자기소개서

(2쪽)

,— <u>, , , , , , , , , , , , , , , , , , </u>
○ 각 항목에 대하여 600자 이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본 항목에 따라 기술하고 지원동기, 성격 및 가치관, 업무의 전문성, 앞으로의 다짐 등 자신의 생각 등이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작성 분량은 2배 이내로 하고 학교명, 출신지, 예전 직장, 부모직업 등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ol> <li>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거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ol> <li>갑작스럽게 발생한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활용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자기소개서

(3쪽)

3.	과거 업무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 이견이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업무에 대해 가장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험 및 경력기술서

		(4쪽
	○ 작성요령	
	- 이력서에 기재한 직무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음	
	1) 소속 조직 / 본인이 맡은 주요 역할	
	2) 주요 활동 내용 및 성과(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을 나누어 작성 기재)	
	3) 활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행동	
	4) 본인의 성과(업무 추진)으로 인해 조직에 기여한 내용 및 기여 정도	
	5) 지원분야 업무 수행 시, 본인의 강점과 기여할 수 있는 측면	
	이 시천군약 남구 구행 시, 순천의 성업의 시역될 구 있는 국원 	
- 1		

#### 【붙임 4】

#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여수시
이용 목적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공직자 이해관계 확인 포함)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2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채용 진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 제공 으로 당해 채용시험 지원 불가

2023. . .

성 명 (서 명)

여수시장 귀하

#### 【붙임 5】

#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관계 확인서

- 성 명 :
- 응시번호 :
- 이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현황
  - \* 배우자, 본인의 4촌 이내 친족,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별첨 참조)

연번	친인척 성명	친인척 직급(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1			
2			
3			
해당			
없음			

상기 본인은 공정한 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시청 내 친인척현황 조사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으며 해당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수시 비정규직 채용에 응시가 제한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하며 서약합니다.

2023. . .

작성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 【붙임 5-1】

## 작성 대상 친족 기준

구분		0촌	1촌	2촌	3촌	4촌
본인	친가	부부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 및 그 배우자	○백부,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형제의 자녀(조카)	○ 백부,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o 외조부모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배우자	친가		ㅇ부모	○조부모 ○형제 및 그 배우자	○백부,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형제의 자녀(조카)	○백부, 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o 외조부모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 여수시 공고 제2023-1795호

# 공시 송달 공고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율촌 가장·화양 이천·소호 항호) 완료된 토지의 면적 감소분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규정에 따라 미수령 조정금에 대해 공탁할 예정으로 채권 및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제작불가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대상: 2명(가장지구 1명, 이천지구 1명)
- 2. 공고기간: 2023. 6. 14. ~ 2023. 6. 28.(15일간)
-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율촌면·화양면사무소
- 4. 기타사항: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474, 3475)으로 문의 바랍니다.
- 5. 붙임 : 공시송달 조서 1부.

2023. 6. 14.

여 수 시 장(인)

####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예정사항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조서

성명	부동산소재지	토지소유자	취급구분	주소	제작결과	배달결과
메**씨앤아이대부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941-2	유*용	등기	우)062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 화*빌딩 *층(역삼동)	제작완료	반송(수취인불명)
유*일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540	김*모	등기	여수시 서정 1***	제작불가	

#### 이천지구 경계미확정 토지 지적공부 정리결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조서

성명	토지소재지	취급구분	주소	제작결과	배달결과
이순*	화양면 이천리 산87-2	-	전라남도 여천군 이천리 ***	제작불가	주소불명
문양*	화양면 이천리 432, 434, 435-3	등기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대길 **	제작완료	수취인불명
문청*	화양면 이천리 산87-2	등기	충청남도 이상시 청운로176번길 23, *동 ***호(권곡동, 건일빌라)	제작완료	수취인불명

여수시 공고 제2023-1798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3. 1. 1.)」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1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관련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3.

여 수 시 장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1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시행기관 : 여수시

다. 용역 주요내용

1) 현 황(1구역, 9개소)

			옹벽현황				
연번	법정동	단지명	7.7	최고높이	총길이	구간수	
			구조	(m)	(m)	十七十	
1	소라면	죽림휴먼시아2차아파트	철근콘크리트	6	400	2	
2	고소동	한신아파트	철근콘크리트	6	103	4	
3	봉강동	해태동백타운	철근콘크리트	8	180	4	
4	광무동	럭키광무아파트	철근콘크리트	5	200	2	
5		신월금호타운아파트	철근콘크리트	10	600	1	
	제이드	지이그라르시코드	철근콘크리트,		F00	0	
6	신월동	신월코아루아파트	보강토옹벽	6	500	8	
7		신월대주아파트	철근콘크리트	7	810	4	
0		에 2 교회 2 레시드1다기	보강토옹벽,	10	F00	17	
8	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1단지	석축	10	580	17	
9		엑스포힐스테이트2단지	철근콘크리트	8	250	1	

※ 과업대상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2)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 역 비 : 금131,67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바. 입찰예정시기 : 2023년 6월 중(PQ심사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 1) ~ 4)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u>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전</u>** 진단전문기관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토목(교량및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4)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1)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23. 6. 19.(월) 18:00(12시~13시 접수 불가)** (※ 근무시간에만 가능하며, 우편 또는 탁송에 의한 제출은 불가)
  - 2)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여수시청 1층 건축과
  - 3) 제출서류
    - 가)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나) 그 외 등록에 필요한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탁송접수 불가)**
  - 5.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평가기준 포함) 교부 :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 (http://www.g2b.go.kr)

#### 3.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 및 가격입찰 대상자 통보

- 가.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별표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0호 (2023.3.13.)에 따라 고시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2개사미만 업체가 참가할 경우 재공고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가 10개사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0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나.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이 90점 이상인 업체가 10개사 이상인 경우 상위 10개 업체까지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단, 10위가 동점인 경우 모두 선정)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 낙찰자 결정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 12. 23.)」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2)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낙찰 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3)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4) 적격심사 기준
  - 배점한도(100점) = 용역수행능력평점(38점, 지역업체참여도 점수 합산하여 평가)+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1.0점)
  - ※ 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
  - ※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

#### 5. 입찰참가제한 및 위배 시 입찰보증금 국고 회수, 입찰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해당관리주체에 소속 되어 있거나 해당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 6. 기타사항

-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이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증명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나. 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 으로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라.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마. 여수시의 사정에 따라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업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061-659-4094), 입찰공고,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청 회계과(☎061-659-3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1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업체 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2023. 6.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1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시행기관 : 여수시

다. 용역 주요내용

1) 현 황

○ 1구역(9개소)

				옹벽현황		
연번	법정동	단지명	구조	최고높이	총길이	구간수
			12	(m)	(m)	141
1	소라면	죽림휴먼시아2차아파트	철근콘크리트	6	400	2
2	고소동	한신아파트	철근콘크리트	6	103	4
3	봉강동	해태동백타운	철근콘크리트	8	180	4
4	광무동	럭키광무아파트	철근콘크리트	5	200	2
5		신월금호타운아파트	철근콘크리트	10	600	1
6	신월동	신월코아루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보강토옹벽	6	500	8
7		신월대주아파트	철근콘크리트	7	810	4
8	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1단지	보강토옹벽, 석축	10	580	17
9		엑스포힐스테이트2단지	철근콘크리트	8	250	1

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 역 비 : **금131,67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바. 입찰예정시기 : 2023년 6월 중(PQ심사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 2. 참가자격 : 가 ~ 라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 전진단전문기관

-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교량및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

#### 3. 입찰 참가자격 선정방법

- 가.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0호 (2023.3.13.)에 따라 고시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2 개사 미만 업체가 참가할 경우 재공고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가 10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0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나.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이 90점** 이상인 업체가 10개사 이상인 경우 상위 10개 업체까지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단. 10위가 동점인 경우 모두 선정)
-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 라. 용역업체 선정절차



#### 4. 용역 참가신청서 및 용역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23. 6. 19.(월) 18:00(12시~13시 접수 불가) (※ 근무시간에만 가능하며, 우편 또는 탁송에 의한 제출은 불가)
-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여수시청 건축과
- 다. 제출서류
  - 1)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2) 그 외 등록에 필요한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라.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탁송접수 불가)

#### 5.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후 일체의 변경, 수정, 추가 자료를 받지 아니함)

- 나. 모든 증빙자료는 관련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본을 첨부할 경우 "원본대조필" (회사 인감날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다. 참여기술인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 관리 수탁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타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료와 제출된 자료가 상이하거나, 필요한 서류나 실적을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증빙서류는 항목별로 시작 페이지에 색 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실격처리
  - 2) 신청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와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과 일련번호 등으로 표시
- 바.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아. 평가기준에서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 자. 본 안내평가서와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여수시 건축과(공동주택관리팀 담당자 조만호 🏗 061-659-40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6. 평가방법

- 가. 평가방식
  - 1)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 2) 용역수행 참가 신청업체가 작성한 평가신청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 나. 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합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범위
  -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점
총 계			10	00
	소 계		4	5
		• UO II	_	
	책임기술인	• 경 력	8	18
	¬ㅁ기른	• 용역수행실적(건수)	5	10
		• 용역수행실적(금액)	5	
참여기술인		• UO CI	2	
(45)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 력	6	10
	군아일 찍임기절인	• 용역수행실적(건수)	5	18   
		• 용역수행실적(금액)	5	
		• UO TI	2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 력	3	9
		• 유사용역실적(건수)	4	
유사용역	소 계			.5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기준	• 용역수행 건수		2
(25)	8보일 기간 최근 J한단 기간	• 용역수행 금액		3
	소 계		1	0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2	4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용역업자, 참여건설기술인	3	3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3	3
	소 계		1	0
기술개발 및	개발 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	1
및 투자실적 (10)	활용 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의 활용 실적	-	1
	투자 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 평균 비율	8	3
	소 계		1	0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		5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4

####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비고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 ~ 0.3	

※ 단, 1), 2)항 점수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 최대 100점까지 인정함.

#### 7.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45점】(공통분야)

-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총 3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해당 기술자격증, 학력인정서,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수료증,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 인감날인)

#### 1) 사업 책임기술인 : (18점)

#### 가) 등급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고급기술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합니다.(동법 시행령 별표5 2번에서 규정한 자격기준에 준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교육 (토목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당해용역 수행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나) 경력평가(8점)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점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 전문분야 5년, 전문분야 외 10년일 경우 평가점수 : 5년 + 6.9년 = 11.9년으로 8점-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4.8점에 해당하는 최대 6.9년까지 인정

#### 다) 실적(건수) 평가(5점)

-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토목분야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 점

구분	14건 이상	14건 미만 ~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 단. 0건은 0점 처리 함.
- ※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평가점수 : 5건 + 7.9건 = 12.9건으로 4.5점
  -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7.9건까지 인정

#### 라) 실적(금액) 평가(5점)

#### - 배 점

구분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 단. 0원은 0점 처리 함.
- ※ 전문분야 5억, 전문분야 외 10억 일 경우 평가점수 : 5억 + 3.9억 = 8.9억으로 5점
  -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3.99억까지 인정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점)

#### 가) 등급평가(2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교육 (토목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합니다.
- 배 점

분 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
토 목 분 야		2.0		0

#### 나) 경력평가(6점)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 점

구분	7년이 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 전문분야 5년, 전문분야 외 10년 일 경우 평가점수 : 5년 + 3.9년 = 8.9년으로 5점
  -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3.6점에 해당하는 최대 3.9년까지 인정함

#### 다) 실적(건수) 평가(5점)

-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 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 점

구분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단, 0건은 0점 처리 함.

\*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평가점수 : 5건 + 4.9건 = 9.9건 으로 4.5점-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4.9건까지 인정함

#### 라) 실적(금액) 평가(5점)

구분	5억원이상	5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 단. 0원은 0점 처리 함.
- \* 전문분야 5억, 전문분야 외 8억 일 경우 평가점수 : 5억 + 3.49년 = 8.49억으로 5점-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3.49년까지 인정함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점)

#### 가) 등급평가(2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별표1]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교육 (토목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합니다.

#### - 배 점

분 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		
토 목 분 야		2.0				

#### 나) 경력평가(3점)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 점

구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 전문분야 3년, 전문분야 외 8년 일 경우 평가점수 : 3년 + 1.9년 = 4.9년으로 2.7점-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1.8점에 해당하는 최대 1.9년까지 인정함

#### 다) 실적평가(4점)

-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토목분야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 점

구분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4.0	3.6	3.2	2.8	2.4

- ※ 단. 0건은 0점 처리 함.
- ※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6건 일 경우 평가점수 : 5건 + 1.9건 = 6.9건으로 3.6점
  -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2.4점에 해당하는 최대 1.9건까지 인정함

#### 나. 참여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25점】

#### 1) 기 준

- 가) 유사용역사업 인정대상사업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의 준공 용역수행실적에 한합니다.
-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합니다.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다) 수행실적은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
- 라)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 표기)
- 마)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한 용역은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바) 유사용역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실적금액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 2) 배 점

#### 가) 실적건수(12점)

구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12.0	10.8	9.6	8.4	7.2

※ 단. 0건은 0점 처리 함.

#### 나) 실적금액(13점)

구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수	13.0	11.7	10.4	9.1	7.8

※ 단, 0원은 0점 처리 함.

#### 다. 신용도【10점】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 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최근 1년간(처분일 기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합니다.
- 2)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3점)
  - 가) 용역업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합니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나) 참여기술인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합니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3) 재정상태(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합니다.
-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가능합니다.
-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0 ō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활용한 토목분야, 건축분야
- 1) 개발실적(1점)
  -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합니다.

① 건설신기술: 0.5점 / 건당

② 특 허: 0.3점 / 건당

나)「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합니다.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다)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합니다.
- 라) 위 가)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합니다.

#### 2) 활용실적(1점)

-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합니다
- 나)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분야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합니다.
- 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① 건설신기술: 0.5점 / 건당

② 특 허: 0.3점 / 건당

- 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 마)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합니다.

- 건설신기술 및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50건 이상	50건 미만 ~ 20건 이상	20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1건 이상		
실적금액	7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 0.5억원 이상		

- ※ 위 사용실적건수와 사용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주1) 건설신기술의 사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사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함(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주2) 특허의 사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사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함 (한국발명진흥회)

#### 3) 투자실적(8점)

-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함.)
-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다)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

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구 분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ſ	점 수	8.0	7.2	6.4	5.6	4.8

#### 마. 업무중첩도【10점】

- 1) 사업 책임기술인(6점)
  - 가)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가)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8. 가점 세부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ul> <li>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li> <li>- 1% 이상 : 0.1점</li> <li>- 2% 이상 : 0.2점</li> <li>- 3% 이상 : 0.3점</li> <li>*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li> <li>*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li> <li>*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li> <li>•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li> <li>•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li> </ul>

#### 9.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 2) 사업수행능력 평가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라) 인감증명서(법인 포함),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 나. 서류 작성 방법
  - 1) 페이지 수 : 제한없음
  - 2) 인쇄 및 제본
    -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6mm)
    - 나) 재 질 : 백상지(80g/㎡)
    -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 라) 제본방법 : 무선 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 마) 제본순서
      -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서식)
      - ② 목 차
      - ③ 용역참여 신청서(서식1)
      - ④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식2)
      - ⑤ 참여회사의 일반현황(서식3)
      - ⑥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 ⑦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서식4)
      - ⑧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서식5)
      - ⑨ 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 ⑩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 ⑪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 ⑫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6)
      - ③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서식7)
      - (4)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서식8)
      - 15 재정상태 건실도(서식9)
      - 16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서식10)
      - ① 투자실적(서식11)
      - 18 업무의 중첩도(서식12)
      - (19) 교육 이수 실적(서식13)
      - ②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서식14)
      - ②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현황)(서식15)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서식16)

-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4) 기타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함.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합니다.
- 다)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자료이어야 합니다.
-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 및 지침

2023. 5.



(표지서식)

접수번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1구역) 정밀안전점검 】

2023. . .(제출일)

업 체 명

### 【서식 1】

# 정밀안전점검 용역 참여 신청서

수 신: 여수시장

조 : 건축과장

제출일자 : 2023. . .

제 목 : 정밀안전점검 용역참여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1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참여하고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사본 1부)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참여기술인 정밀안전점검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 1부.

7.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각 1부. 끝.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접수번호

#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용 역 명 :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1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3. 회 사 명 :

4. 접 수 자 : 직 성명 : (인)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여 수 시 장(관인생략)

### 【서식 2】

접수번호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본인은 OOOO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고자 별첨과 같이 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발주청의 어떠한 처분에도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3. . .

# 여수시장 귀하

# 【서식 3】

#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ਣੀ ਹੀ ਸੀ	대 표 자	
회 사 명	연 락 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회사설립 연 도		

2023. . .

작성자 : 직 성명 (인)

여수시장 귀하

#### 【서식 4】

#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

구 분		서 대	생년월일	학력 기술인	기술인		자격증		해당 · 분야
T	구 분 성명	\begin{align*} \begin	/생선결길	(학위)	등급	종류	등록번호	하면서	군아 경력
사업 기 설									
분야 기 설									
분야 기 설									

- 주) 1.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2.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 3. 참여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교육(토목분야)"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단, 정밀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 처리함)
  - 4.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 5. 근무경력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 6. 참여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서식 5】

#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소속	-		직위		자격증	종 류 취 득 일 등록번호	:			
주민 번	투 호			최종 <sup>*</sup> (학	학교 위)		전 공		근무	·경력	ļ	친 월
					0 7	병 력 사	. 항					
근무기간 근무 >		+	직	위	담	당	업	무				

### 나. 해당분야 경력(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평가서 및 엑셀로 작성하여 USB 제출

여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 한번	<del>\$</del> ∃ ₹	2 下へ	삼위기신 	(실참여일수)				
1	세) 00적미하고 정기	여수시청	15.01.01-15.6.30	30				
1	예) 00정밀안전점검	역구시경	(경력증명서일)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다. 해당분야 실적(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참여기간	발주처	비고
	허위로 기재하9	였을 경우 평				
합계	건	천원				

- 주)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토목분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말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 2.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3. 사업책임기술인·분야책임기술인·분야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4.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증명서 또는 발주처발행 참여기술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 5.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식 6】

#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고
합 계						

- 주) 1. 유사용역사업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5년(공고일 현재)내 토목분야 정밀안전 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2022.12.23.)〉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야여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한다.
  -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한다.
  -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원본 대조필'날인)
  - 4. 증명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 【서식 7】

# 점검 ·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업체	용 역 명	조치기관명	평 가	내 용	· 비 고	
(대표자)	8 7 8	조시기단당	평가결과	사 유	,	

- 주) 1.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미흡' 및 '불량' 및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내용을 기재한다.
  - 2.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 【서식 8】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고

#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건	최근 1년간 참여책임기술인이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 야	성	玛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또는 자격 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 2.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인은 "해당 사항 없음" 표시
  -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 【서식 9】

# 재정상태 건실도

#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립년도	
자 본 금	

### 2. 재정상태 건실도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해당등급 (○)					
점수	3.0	2.7	2.4	2.1	0

-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 점으로 평가한다.

#### 【서식 10】

# 기술개발 및 활용 실적

#### 가.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개발명칭	지정권자	지정일	만료일	활 용	비고	
기정한모	/ [ 현 경 경	기정 변수	기경 린	진프린	건수	금액(억원)	11-14

####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번호	개발명칭 최초출원인 출원일 만료일		마ㄹ이	활 용	비고		
· 중국민모	/ [ 현 경 경	' 의 소 골 전 인	글 건 근	진프린	건수 금액(억원)		P1-14

- 주) 1. 기술개발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진단관련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기재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 2.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 지정서·활용실적증명서, 특허는 특허증· 등록원부·최초출원인 확인서, 활용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3. 자체개발만 작성하며 출원중인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제외한다.
  - 4.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5.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활용한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 투 자 실 적

(단위: 백만원)

구	<b></b> 世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용역부문	연구개발비				
기술개발	교육훈련비				
투자금액	기 타				
소	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b				
투자비율 (%=@/b)×100)					3개년평균치로 기재

- 주) 1.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조세감면 규제법상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및 "건설 기술진흥법령조에 따라 신고 또는 지정된 사항"에 한하여 증빙 서류를 첨부 한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사본)
  - 2.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3.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 으로 인정한다.
  - 4.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중 사무실 임대수입, 제조업수입을 제외하고 기재한다.
    - (건설부문은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기술 관련분야를 총칭하며, 감리와 공사도 포함 하다.)
  - 5. 2020년, 2021년, 2022년 결산보고서 사본첨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6.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하고 건설부분 총매출액은 기입
  - 7.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활용한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서식 12】

# 업무의 중첩도

# □ 사업책임기술인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刊	고

### □ 분야책임기술인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 주) 1.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별로 작성한다.
  - 2.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며, 허위기재 시에는 임의로 처리한다.
  -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 【서식 13】

# 교육이수 실적

### □ 참여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등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함(단,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처리 되고,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처리 함)

# 【서식 14】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집계 현황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평가 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계			45		
		소 계	18		
	וא ויא וא	등 급	_	적격	
	사업책임 기 술 자	경 력	8		
참	, , ,	실적건수	5		
여		실적금액	5		
		소 계	18		
기	분야책임	등 급	2		
술	군아색임 기 술 자	경 력	6		
		실적건수	5		
자		실적금액	5		
	분야참여 기 술 자	소 계	9		
		등 급	2		
		경 력	3		
		실적건수	4		
유사용역	계		25		
수행실적	건 수		12		
	금 액		13		
	계		10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기술개발	계 기계		10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1		
	활용실적		1		
	투자실적		8		
업 무	계		10		
중첩도	사업책임기술인		6		
7] 7-]	분야책임기술인		4		고성기스이 지그 ㅋ º ° · ~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 2. 평가내역

평가항목		세브	부내용	업체명	지분	≧(%)	업체명	지분율(%)	비고	
				실적				26.2.2.2		미끄
	구	분	성	명	등 급	경 릭	<u>력 실</u>	덕(건수)	실적(금액)	
	책임기술인					년	월 -	건	<u>억원</u>	
참 여	분야별 ①	1				년	월 -	 건	<u>억원</u>	
기술인	책임 기술인	2				년	월 -	 건	억원	
	분야별	1				년	월 -	<u>-</u> 건	<u>억원</u>	
	참여 기술인	2				년	월 -	<u>고</u> 건	<u>억원</u>	
유사용역	 업체	 시저	건 금	수		ı		<u></u>	건	
수행실적			금	액				_	<u>억원</u>	
	점검. 실시 평가	신난 결과 결과	평기	<b> </b> 결과	미흡 : 매우불량	건 : 7	/ 건	불	량: 건	
	입찰참			벙기간				_	월	
신			구 채이	<u>분</u> 기술인		성 명			개월 수 <u>월</u>	
			분야별	<u>기월인</u> ①					<u></u> 월	
<u> </u>	업무정	지드	책임					_		
			기술인	2				_	<u>월</u>	
도			분야별 참여	1				_	<u>월</u>	
			기술인	2				_	<u>월</u>	
			정상태 도(등급)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구	분		건명		경과기간		
	개발	시저	건설	신기술					<u>건</u> 건	
	/미리	27	-	-1					<u>- 건</u> - 건	
			특	허					<u>건</u>	
기술개발			구	분	건명	실적건수	실적금액	가중치		
및	활용	실적	건설	신기술					<u>건</u> _건	
투자실적	20	_ ,	특	하					<u>건</u>	
' ' - '					1=1:1-	0=113-	0=11-1-	<b>→11</b>	<u>건</u>	
				<u>분</u> 기술개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실적비율	
	투자	실적		T월/TI 자액	억원	<u>억원</u>	억원	. 억운	일 %	
			건설	설부문 개출액	<u>억원</u>	<u>억원</u>	억원	억운		
	구 분		성	명	건 수		7	복기간		
업 무	책임기 분야별								<u>월</u>	
중첩도	군아일 책임	1)							월	
	게임 기술인 ②				월					
가 점	건설기 신규고		평기	· 가결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sup>※</sup> 평가점수 산출근거 및 평가내역을 반드시 작성바랍니다.

## 【서식 15】

##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현황)

구 분 (참여회사)	최근1년간 신규고용인원①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②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①/②×100)	刊	고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2023. . .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 여수시장 귀하

## 【서식 16】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ㅇ 용역명: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3.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여수시장 귀하

## 남해안 게점도시 미창여수



## - 여수시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1구역)-

# 정밀안전점검 용역수행 과업지시서

2023. 5.

## 목 차

## I.총 칙

- 1.1 과업의 명칭
- 1.2 과업의 목적
- 1.3 과업의 개요
- 1.4 적용 법규

## Ⅱ.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2.3 자료수집 및 분석
- 2.4 현장조사 및 시험
-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2.7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 2.8 유지관리 방안제시
- 2.9 보고서 작성

#### [. 총칙

####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여수시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1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 칭하고, 여수시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하다.

####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공동주택 단지 내 급경사지(옹벽)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 점검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3 과업의 개요

가. 시설물의 개요

(1) 1구역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 9개소

				옹벽현황	•	
연번	법정동	단지명	구조	최고높이	총길이	구간수
			12	(m)		121
1	소라면	죽림휴먼시아2차아파트	철근콘크리트	6	400	2
2	고소동	한신아파트	철근콘크리트	6	103	4
3	봉강동	해대동백타운 철근콘크리트 8		8	180	4
4	광무동	럭키광무아파트	철근콘크리트	5	200	2
5		신월금호타운아파트	철근콘크리트	10	600	1
6	신월동	신월코아루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보강토옹벽	6	500	8
7		신월대주아파트	철근콘크리트	7	810	4
8	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1단지	보강토옹벽, 석축	10	580	17
9	422	엑스포힐스테이트2단지	철근콘크리트	8	250	1

#### (2)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시설물의 범위	정밀안전점검	비고
		지반, 기초부	0	
옹벽	주요 부재	전면부	0	
		배수시설	0	

- 나. 용 역 비 : 금131,6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다.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 (1) 자료수집 및 분석
  - (2) 현장조사 및 시험
  -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4)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 (5) 보고서 작성
  -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라.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다)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 라)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마. 발주기관 및 연락처
  - (1) 발주기관 : 여수시 건축과(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 (2) 연 락 처 : 061-659-4094

## 1.4 적용 법규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 라. 기타 관련법규

#### Ⅱ.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2)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3)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4)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 나.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가. 과업수행방법

-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 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 2.3 자료수집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 나.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 다. 유지관리 자료수집(시설물 관리대장) 및 담당자 면담

## 2.4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시설물의 외관조사

-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
  -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 ④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 나. 시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코어채취 등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시험량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시행 하여야 한다.

####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가.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 나. 손상 및 결함 원인 분석

#### 2.6 상태 평가

-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 나. 비파괴현장시험 결과분석
- 다. 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
- 라.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2.7.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 가. 과업 수행 중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유지 관리개선방안을 제시
- 나. 구조물의 결함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보수·보강대책을 제시 (외관 조사망도에 결함위치를 표기하면서 기둥번호도 병행 표기)
- 다. 염해, 탄산화, 침출 등 각종 열화 평가 결과 대책 제시
- 라.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등 각종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 제시

- 마. 내구성능 평가 결과 대책 제시
- 바. 보수·보강 대상별로 보수시기, 우선순위 및 단기, 중기, 장기 보수·보 강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사. 보수·보강방안으로 제시된 공법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한다.
- 아. 보수·보강에 제시된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 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자. 보수·보강 제시 시 유형별, 조건별 특성에 맞는 적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 집중적인 균열, 누수가 있는 곳은 원인과 대책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유지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2.8. 유지관리 방안제시

- 가.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상태등급 평 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 지관리 방향 등을 제시
- 나.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적합한 유지관리 지침 서를 별도의 책자로 작성 제출
- 다.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 라.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습 또는 수집자료 직접제시 및 활용방 안 제시
- 마. 차기 안전점검 시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시

## 2.9. 보고서 작성(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가.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 나.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 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 다.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라.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 마.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하다.
- 바.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 설계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 아.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자. 중가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 라. 부록작성

- (1) 외관조사망도
- (2)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3) 상태평가 자료
- (4)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5)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6)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7) 사전조사 자료 일체

(8) 기타 참고 자료

## 마. 종합보고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외관조사망도 포함, 사진첩 포함)	3부
CD	3SET

여수시 공고 제2023-1799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3. 1. 1.)」에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2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관련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3.

여 수 시 장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2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시행기관 : 여수시

다. 용역 주요내용

1) 현 황(2구역, 8개소)

			옹벽현황					
연번	법정동	단지명	구조	최고높이	총길이	구간수		
			12	(m)	(m)	121		
1	여서동	여서금호아파트	철근콘크리트,	7	392	4		
1	4/18	역사급호약파트	석축	/	392	4		
2		세종캐슬하임아파트	보강토옹벽	8	160	4		
3	ㅁᄼᄃ	흥화아파트	철근콘크리트	11	1000	3		
4	문수동	문수대성베르힐	산석용벽	10	290	5		
5		문수주공아파트	철근콘크리트	7.7	473	3		
6	미평동	선경2차아파트	철근콘크리트	10	224	1		
7	둔덕동	라온유아파트	철근콘크리트	7.5	1400	21		
8	고 커 8	중앙하이츠아파트	철근콘크리트	7	200	1		

※ 과업대상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2)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 역 비 : 금137,54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바. 입찰예정시기 : 2023년 6월 중(PO심사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 가. 참가자격 : 1) ~ 4)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전 진단전문기관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교량및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4)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1)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23. 6. 19.(월) 18:00(12시~13시 접수 불가)** (※ 근무시간에만 가능하며, 우편 또는 탁송에 의한 제출은 불가)
  - 2)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여수시청 1층 건축과
  - 3) 제출서류
    - 가)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나) 그 외 등록에 필요한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탁송접수 불가)
  - 5.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평가기준 포함) 교부 :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 (http://www.g2b.go.kr)

#### 3.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 및 가격입찰 대상자 통보

- 가.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별표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0호 (2023.3.13.)에 따라 고시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2개사 미만 업체가 참가할 경우 재공고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가 10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0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나.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이 90점 이상인 업체가 10개사 이상인 경우 상위 10개 업체까지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단, 10위가 동점인 경우 모두 선정)
-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

다.(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 낙찰자 결정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 12. 23.)」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2)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낙찰 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3)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4) 적격심사 기준
  - 배점한도(100점) = 용역수행능력평점(38점, 지역업체참여도 점수 합산하여 평가)+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1.0점)
  - ※ 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
  - ※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

#### 5. 입찰참가제한 및 위배 시 입찰보증금 국고 회수, 입찰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해당관리주체에 소속 되어 있거나 해당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마.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 6. 기타사항

-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이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증명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나. 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 으로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라.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마. 여수시의 사정에 따라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업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061-659-4094), 입찰공고,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청 회계과(☎061-659-3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2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업체 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2023. 6.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2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시행기관 : 여수시

다. 용역 주요내용

1) 현 황

#### ○ 2구역(8개소)

				옹벽현황			
연번	법정동	단지명	구조	최고높이	총길이	구간수	
			(m)		(m)	1 ሲገ	
1	여서동	여서금호아파트	철근콘크리트, 석축	7	392	4	
2		세종캐슬하임아파트	보강토옹벽	8	160	4	
3	문수동	흥화아파트	철근콘크리트	11	1000	3	
4	110	문수대성베르힐	산석용벽	10	290	5	
5		문수주공아파트	철근콘크리트	7.7	473	3	
6	미평동	선경2차아파트	철근콘크리트	10	224	1	
7	둔덕동	라온유아파트	철근콘크리트	7.5	1400	21	
8	<b>판덕</b> 중	중앙하이츠아파트	철근콘크리트	7	200	1	

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 역 비 : <u>금137,54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u>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바. 입찰예정시기 : 2023년 6월 중(PQ심사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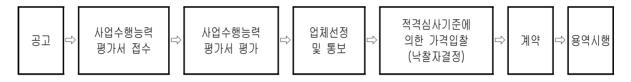
#### 2. 참가자격 : 가 ~ 라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 전진단전문기관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교량및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한정합니다.

#### 3. 입찰 참가자격 선정방법

- 가.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0호 (2023.3.13.)에 따라 고시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2 개사 미만 업체가 참가할 경우 재공고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가 10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0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나.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이 90점** 이상인 업체가 10개사 이상인 경우 상위 10개 업체까지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단. 10위가 동점인 경우 모두 선정)
-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 라. 용역업체 선정절차



#### 4. 용역 참가신청서 및 용역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23. 6. 19.(월) 18:00(12시~13시 접수 불가) (※ 근무시간에만 가능하며, 우편 또는 탁송에 의한 제출은 불가)
-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여수시청 건축과
- 다. 제출서류
  - 1)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2) 그 외 등록에 필요한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라.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탁송접수 불가)

#### 5.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일체의 변경, 수정, 추가 자료를 받지 아니함)

- 나. 모든 증빙자료는 관련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본을 첨부할 경우 "원본대조필" (회사 인감날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다. 참여기술인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 관리 수탁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타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료와 제출된 자료가 상이하거나, 필요한 서류나 실적을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증빙서류는 항목별로 시작 페이지에 색 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실격처리
  - 2) 신청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와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과 일련번호 등으로 표시
- 바.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아. 평가기준에서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 자. 본 안내평가서와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여수시 건축과(공동주택관리팀 담당자 조만호 🏗 061-659-40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6. 평가방법

- 가. 평가방식
  - 1)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 2) 용역수행 참가 신청업체가 작성한 평가신청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 나. 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합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범위
  -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AH	점
총 계			10	00
	소 계		4!	5
		• UO II	_	
	책임기술인	• 경 력	8	18
	¬ㅁ기른	• 용역수행실적(건수)	5	
		• 용역수행실적(금액)	5	
참여기술인		• UO	2	
(45)	보아병 채이기수이	• 경 력	6	1Ω
	표어된 학교기원인	• 용역수행실적(건수)	5	- 18
	*** 변화 책임기술인 변화 복합 보이 함께	5		
		• UO	2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 력	3	9
	• 유사용역실적(건수) 소 계	4		
유사용역	소 계		2	5
수행실적	공고의 기주 최근 5년가 기주	• 용역수행 건수	12	2
(25)	SEE NE BE VEE NE	• 용역수행 금액	13	3
	소 계		10	0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용역업자, 참여건설기술인	3	3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3	3
	소 계		10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 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1	
투사실석   (10)	활용 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의 활용 실적	1	
	투자 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 평균 비율	8	}
Q 디즈 킨 드	소 계		10	0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6	;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	4	-

####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비고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 ~ 0.3	

※ 단, 1), 2)항 점수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 최대 100점까지 인정함.

#### 7.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45점】(공통분야)

-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총 3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해당 기술자격증, 학력인정서,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수료증,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 인감날인)

#### 1) 사업 책임기술인 : (18점)

#### 가) 등급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고급기술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합니다.(동법 시행령 별표5 2번에서 규정한 자격기준에 준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교육 (토목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당해용역 수행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나) 경력평가(8점)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점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 전문분야 5년, 전문분야 외 10년일 경우 평가점수 : 5년 + 6.9년 = 11.9년으로 8점-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4.8점에 해당하는 최대 6.9년까지 인정

#### 다) 실적(건수) 평가(5점)

-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토목분야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 점

구분	14건 이상	14건 미만 ~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 단, 0건은 0점 처리 함.
- ※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평가점수 : 5건 + 7.9건 = 12.9건으로 4.5점
  -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7.9건까지 인정

#### 라) 실적(금액) 평가(5점)

#### - 배 점

구분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 단. 0원은 0점 처리 함.
- ※ 전문분야 5억, 전문분야 외 10억 일 경우 평가점수 : 5억 + 3.9억 = 8.9억으로 5점
  -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3.99억까지 인정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점)

#### 가) 등급평가(2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교육 (토목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합니다.
- 배 점

분 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
토 목 분 야		0		

#### 나) 경력평가(6점)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 점

구분	7년이 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 전문분야 5년. 전문분야 외 10년 일 경우 평가점수 : 5년 + 3.9년 = 8.9년으로 5점
  -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3.6점에 해당하는 최대 3.9년까지 인정함

#### 다) 실적(건수) 평가(5점)

-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 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 점

구분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단. 0건은 0점 처리 함.

\*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평가점수 : 5건 + 4.9건 = 9.9건 으로 4.5점-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4.9건까지 인정함

#### 라) 실적(금액) 평가(5점)

구분	5억원이상	5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 단. 0원은 0점 처리 함.
- ※ 전문분야 5억, 전문분야 외 8억 일 경우 평가점수 : 5억 + 3.49년 = 8.49억으로 5점-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3.49년까지 인정함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점)

#### 가) 등급평가(2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별표1]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교육 (토목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합니다.

#### - 배 점

분 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
토 목 분 야	2.0			

#### 나) 경력평가(3점)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 점

구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 전문분야 3년, 전문분야 외 8년 일 경우 평가점수 : 3년 + 1.9년 = 4.9년으로 2.7점-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1.8점에 해당하는 최대 1.9년까지 인정함

#### 다) 실적평가(4점)

-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토목분야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 점

구분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4.0	3.6	3.2	2.8	2.4

- ※ 단. 0건은 0점 처리 함.
- ※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6건 일 경우 평가점수 : 5건 + 1.9건 = 6.9건으로 3.6점
  -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2.4점에 해당하는 최대 1.9건까지 인정함

#### 나. 참여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25점】

#### 1) 기 준

- 가) 유사용역사업 인정대상사업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용역수행실적에 한합니다.
-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합니다.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다) 수행실적은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
- 라)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 표기)
- 마)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한 용역은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바) 유사용역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실적금액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 2) 배 점

#### 가) 실적건수(12점)

구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12.0	10.8	9.6	8.4	7.2

<sup>※</sup> 단. 0건은 0점 처리 함.

#### 나) 실적금액(13점)

구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수	13.0	11.7	10.4	9.1	7.8

<sup>※</sup> 단, 0원은 0점 처리 함.

#### 다. 신용도【10점】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 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최근 1년간(처분일 기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합니다.
- 2)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3점)
  - 가) 용역업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합니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나) 참여기술인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합니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3) 재정상태(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합니다.
-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가능합니다.
-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0 ō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활용한 토목분야. 건축분야
- 1) 개발실적(1점)
  -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합니다.

① 건설신기술: 0.5점 / 건당

② 특 허: 0.3점 / 건당

나)「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합니다.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다)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합니다.
- 라) 위 가)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합니다.

#### 2) 활용실적(1점)

-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합니다
- 나)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분야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합니다.
- 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① 건설신기술: 0.5점 / 건당

② 특 허: 0.3점 / 건당

- 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 마)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합니다.

- 건설신기술 및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ㅜ 판 	1.0	0.9	0.8	0.7	0.6
실적건수	50건 이상	50건 미만 ~ 20건 이상	20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1건 이상
실적금액	7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 0.5억원 이상

- ※ 위 사용실적건수와 사용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주1) 건설신기술의 사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사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함(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주2) 특허의 사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사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함 (한국발명진흥회)

#### 3) 투자실적(8점)

-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함.)
-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다)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

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구 분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마. 업무중첩도【10점】

- 1) 사업 책임기술인(6점)
  - 가)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가)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8. 가점 세부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ul> <li>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li> <li>- 1% 이상 : 0.1점</li> <li>- 2% 이상 : 0.2점</li> <li>- 3% 이상 : 0.3점</li> <li>*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li> <li>*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li> <li>*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li> <li>•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li> <li>•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li> </ul>

#### 9.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 2) 사업수행능력 평가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라) 인감증명서(법인 포함),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 나. 서류 작성 방법
  - 1) 페이지 수 : 제한없음
  - 2) 인쇄 및 제본
    -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6mm)
    - 나) 재 질 : 백상지(80g/㎡)
    -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 라) 제본방법 : 무선 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 마) 제본순서
      -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서식)
      - ② 목 차
      - ③ 용역참여 신청서(서식1)
      - ④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식2)
      - ⑤ 참여회사의 일반현황(서식3)
      - ⑥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 ⑦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서식4)
      - ⑧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서식5)
      - ⑨ 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 ⑩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 ⑪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 ⑫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6)
      - ③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서식7)
      - (4)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서식8)
      - 15 재정상태 건실도(서식9)
      - 16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서식10)
      - ① 투자실적(서식11)
      - 18 업무의 중첩도(서식12)
      - (19) 교육 이수 실적(서식13)
      - ②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서식14)
      - ②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현황)(서식15)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서식16)

-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4) 기타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함.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합니다.
- 다)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자료이어야 합니다.
-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 및 지침

2023. 5.



(표지서식)

접수번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2구역) 정밀안전점검 】

2023. . .(제출일)

업 체 명

#### 【서식 1】

## 정밀안전점검 용역 참여 신청서

수 신: 여수시장

조 : 건축과장

제출일자 : 2023. . .

제 목 : 정밀안전점검 용역참여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2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참여하고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사본 1부)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참여기술인 정밀안전점검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 1부.

7.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각 1부. 끝.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접수번호

##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용 역 명 :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2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3. 회 사 명 :

4. 접 수 자 : 직 성명 : (인)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여 수 시 장(관인생략)

### 【서식 2】

접수번호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본인은 OOOO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용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고자 별첨과 같이 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발주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3. . .

# 여수시장 귀하

# 【서식 3】

#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의 사 명 	연 락 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회사설립 연 도		

2023. . .

작성자 : 직 성명 (인)

여수시장 귀하

### 【서식 4】

#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

구 :	1 /	성 명	생년월일	학력 기술	기술인			해당 분야	
1		ð 'ð	0 0000	(학위)	등급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고 아 경력
사업책( 기 술 :									
분야책 <sup>9</sup> 기 술 2									
분야참 <sup>(</sup> 기 술 <sup>(</sup>									

- 주) 1.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2.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 3. 참여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교육(토목분야)"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단, 정밀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 처리함)
  - 4.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 5. 근무경력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 6. 참여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서식 5】

#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소속	-		직위		자격증	종 류 취 득 일 등록번호	:			
주민 번	등 호			최종 <sup>*</sup> (학	학교 위)		전 공		근무	·경력	ļ	친 월
					0 7	병 력 사	. 항					
- 1	근무기	기 간		근	무 ㅊ	+	직	위	담	당	업	무

### 나. 해당분야 경력(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평가서 및 엑셀로 작성하여 USB 제출

여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 한번	<del>\$</del> ∃ ₹	2 下へ	삼위기신 	(실참여일수)			
1	세) 00적미하고 정기	여수시청	15.01.01-15.6.30	30			
1	예) 00정밀안전점검	역구시경	(경력증명서일)	30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다. 해당분야 실적(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참여기간	발주처	비고
	허위로 기재하9	යු을 경우 평				
합계	건	천원				

- 주)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토목분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말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 2.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3. 사업책임기술인·분야책임기술인·분야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4.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증명서 또는 발주처발행 참여기술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 5.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식 6】

#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고
합계						

- 주) 1. 유사용역사업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5년(공고일 현재)내 토목분야 정밀안전 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2022.12.23.)〉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야여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한다.
  -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한다.
  -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원본 대조필'날인)
  - 4. 증명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 【서식 7】

# 점검 ·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업체	용 역 명	フ키기기H	평 가	내 용	น) –
(대표자)	8 7 7	조치기관명	평가결과	사 유	비고

- 주) 1.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미흡' 및 '불량' 및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내용을 기재한다.
  - 2.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 【서식 8】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고

#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건	최근 1년간 참여책임기술인이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 야	성	玛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또는 자격 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 2.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인은 "해당 사항 없음" 표시
  -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 【서식 9】

# 재정상태 건실도

###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립년도	
자 본 금	

### 2. 재정상태 건실도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해당등급					
(O)					
점수	3.0	2.7	2.4	2.1	0

-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 점으로 평가한다.

### 【서식 10】

# 기술개발 및 활용 실적

#### 가.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게바며치	개발명칭 지정권자 지정일 만료일		마근이	활 용	비고		
기정한모	/ [ 현 경 경	기정 변수	기경 린	진프린	건수	금액(억원)		

####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번호	개발명칭	최초출원인	출원일	만료일	활 용	용 실 적	비고
중국천오	/ 기 된 경 / 경	의 소를 된 단	글 전 크	진표된	건수	금액(억원)	P1-14

- 주) 1. 기술개발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진단관련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기재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 2.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 지정서·활용실적증명서, 특허는 특허증· 등록원부·최초출원인 확인서, 활용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3. 자체개발만 작성하며 출원중인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제외한다.
  - 4.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5.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활용한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 투 자 실 적

(단위: 백만원)

구	<b></b> 世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용역부문	연구개발비				
기술개발	교육훈련비				
투자금액	기 타				
소	계 (a)				
건설부문	총매출액 (b)				
투 <i>7</i>	<b>아비율</b>				3개년평균치로
(%=@)	(b) × 100)				기재

- 주) 1.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조세감면 규제법상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및 "건설 기술진흥법령조에 따라 신고 또는 지정된 사항"에 한하여 증빙 서류를 첨부 한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사본)
  - 2.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3.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 으로 인정한다.
  - 4.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중 사무실 임대수입, 제조업수입을 제외하고 기재한다.
    - (건설부문은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기술 관련분야를 총칭하며, 감리와 공사도 포함 하다.)
  - 5. 2020년, 2021년, 2022년 결산보고서 사본첨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6.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하고 건설부분 총매출액은 기입
  - 7.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활용한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서식 12】

# 업무의 중첩도

### □ 사업책임기술인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刊	고

### □ 분야책임기술인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刊	고

- 주) 1.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별로 작성한다.
  - 2.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며, 허위기재 시에는 임의로 처리한다.
  -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 【서식 13】

# 교육이수 실적

### □ 참여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등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함(단,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처리 되고,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처리 함)

# 【서식 14】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집계 현황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평가 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7	베		45		
		소	계	18		
	.1 +1 =1 +1	등	급	_	적격	
	사업책임 기 술 자	경	력	8		
참	/	실적건	]수	5		
여		실적금	7액	5		
9		소	계	18		
기	H 시케이	등	급	2		
술	분야책임 기 술 자	경	력	6		
근	, ,	실적건	1수	5		
자		실적금	7 액	5		
		소	계	9		
	분야참여 기 술 자	등	급	2		
		경	력	3		
		실적건	1수	4		
് മി <b>റ</b> പ്	계		25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 수		12			
	그	핵		13		
	7	4		10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	결과 평가	결과	4		
6.035	입찰참가 제	한, 업무정	[ス]	3		
	재정상티	내 건실도		3		
리스레비	7	4		10		
기술개발 및		·실적		1		
^ 투자실적		실적		1		
	투자	·실적		8		
업 무		4		10		
중첩도		임기술인		6		
분야책임		임기술인		4		
가 점	건설기술인	l 신규고·	용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

# 2. 평가내역

11:	 키가항목		세브	부내용	업체명	지분	≧(%)	업체명	지분율(%)	비고		
				실적				26.2.2.2		미끄		
	구	분	성	명	등 급	경 릭	<u>력 실</u>	덕(건수)	실적(금액)			
	책임기	]술인				년	월 -	건	<u>억원</u>			
참 여	분야별 (	1				년	월 -	 건	<u>억원</u>			
기술인	기술인	2				년	월 -	 건	억원			
	분야별	1				년	월 -	<u>-</u> 건	<u>억원</u>			
	참여 기술인	2				년	월 -	<u>고</u> 건	<u>억원</u>			
유사용역	 업체	 시저	건 금	수		ı		<u></u>	건			
수행실적			금	액				_	<u>억원</u>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평기	<b> </b> 결과	미흡 : 매우불량	건 : 7	/ 건	불	량: 건			
	입찰참			벙기간				_	월			
신			구 채이	<u>분</u> 기술인		성 명			개월 수 <u>월</u>			
			분야별	<u>기월인</u> ①				<u></u> 월				
8	용 업무정지 등 도		업무정지 등		책임					_		
					기술인	2				_	<u>월</u>	
도			분야별 참여	1				_	<u>월</u>			
			기술인	2		<u></u>			<u>월</u>			
			정상태 도(등급)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구	분		건명		경과기간				
	개발	시저	건설	신기술					<u>건</u> 건			
	/미리	27	-	-1					<u>- 건</u> - 건			
			특	허					<u>건</u>			
기술개발			구	분	건명	실적건수	실적금액	가중치				
및	활용	실적	건설	신기술					<u>건</u> _건			
투자실적	20	_ ,	특	하					<u>건</u>			
' ' - '					1=1:1-	0=113-	0=11-1-	<b>→11</b>	<u>건</u>			
				<u>분</u> 기술개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실적비율			
	투자	실적		T월/TI 자액	억원	<u>억원</u>	억원	. 억운	일 %			
			건설	설부문 개출액	<u>억원</u>	<u>억원</u>	억원	억운				
	구 분 성 명		건 수		7	복기간						
업 무	책임기 분야별								<u>월</u>			
중첩도	군아일 책임	1)							월			
	기술인	2							<u>월</u>			
가 점	건설기 신규고		평기	· 가결과		건설기술인	l 신규고-	용율	<u>%</u>			

<sup>※</sup> 평가점수 산출근거 및 평가내역을 반드시 작성바랍니다.

### 【서식 15】

#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현황)

구 분 (참여회사)	최근1년간 신규고용인원①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②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①/②×100)	비	고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2023. . .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 여수시장 귀하

### 【서식 16】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3.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여수시장 귀하

# 남해안 게점도시 미창여수



# - 여수시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2구역)-

# 정밀안전점검 용역수행 과업지시서

2023. 5.

# 목 차

### I.총 칙

- 1.1 과업의 명칭
- 1.2 과업의 목적
- 1.3 과업의 개요
- 1.4 적용 법규

### Ⅱ.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2.3 자료수집 및 분석
- 2.4 현장조사 및 시험
-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2.7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 2.8 유지관리 방안제시
- 2.9 보고서 작성

### [. 총칙

###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여수시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2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 칭하고, 여수시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하다.

###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공동주택 단지 내 급경사지(옹벽)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 점검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3 과업의 개요

가. 시설물의 개요

(1) 2구역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 8개소

				옹벽현횡	•	
연번	법정동	단지명	구조	최고높이	총길이	구간수
			1	(m)	(m)	1.61
1	여서동	여서금호아파트	철근콘크리트, 석축	7	392	4
2		세종캐슬하임아파트	보강토옹벽	8	160	4
3	문수동	홍화아파트	철근콘크리트	11	1000	3
4	#18	문수대성베르힐	산석용벽	10	290	5
5		문수주공아파트	철근콘크리트	7.7	473	3
6	미평동	선경2차아파트	철근콘크리트	10	224	1
7	ERE	라온유아파트	철근콘크리트	<i>7</i> .5	1400	21
8	둔덕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철근콘크리트	7	200	1

#### (2)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시설물의 범위	정밀안전점검	비고
		지반, 기초부	0	
옹벽	왕벽 주요 부재	전면부	0	
	' "	배수시설	0	

- 나. 용 역 비 : 금137,5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다.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 (1) 자료수집 및 분석
  - (2) 현장조사 및 시험
  -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4)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 (5) 보고서 작성
  -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라.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다)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 라)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마. 발주기관 및 연락처
  - (1) 발주기관 : 여수시 건축과(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 (2) 연 락 처 : 061-659-4094

### 1.4 적용 법규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 라. 기타 관련법규

### Ⅱ.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한다.
  -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2)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3)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4)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 나.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가. 과업수행방법

-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 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 2.3 자료수집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 나.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 다. 유지관리 자료수집(시설물 관리대장) 및 담당자 면담

### 2.4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시설물의 외관조사

-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
  -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 ④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 나. 시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코어채취 등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시험량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시행 하여야 한다.

###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가.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 나. 손상 및 결함 원인 분석

### 2.6 상태 평가

-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 나. 비파괴현장시험 결과분석
- 다. 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
- 라.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2.7.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 가. 과업 수행 중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유지 관리개선방안을 제시
- 나. 구조물의 결함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보수·보강대책을 제시 (외관 조사망도에 결함위치를 표기하면서 기둥번호도 병행 표기)
- 다. 염해, 탄산화, 침출 등 각종 열화 평가 결과 대책 제시
- 라.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등 각종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 제시

- 마. 내구성능 평가 결과 대책 제시
- 바. 보수·보강 대상별로 보수시기, 우선순위 및 단기, 중기, 장기 보수·보 강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사. 보수·보강방안으로 제시된 공법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한다.
- 아. 보수·보강에 제시된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 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자. 보수·보강 제시 시 유형별, 조건별 특성에 맞는 적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 집중적인 균열, 누수가 있는 곳은 원인과 대책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유지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2.8. 유지관리 방안제시

- 가.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상태등급 평 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 지관리 방향 등을 제시
- 나.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적합한 유지관리 지침 서를 별도의 책자로 작성 제출
- 다.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 라.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습 또는 수집자료 직접제시 및 활용방 안 제시
- 마. 차기 안전점검 시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시

### 2.9. 보고서 작성(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가.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 나.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 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 다.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라.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 마.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하다.
- 바.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 설계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 아.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자. 중가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 라. 부록작성

- (1) 외관조사망도
- (2)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3) 상태평가 자료
- (4)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5)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6)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7) 사전조사 자료 일체

(8) 기타 참고 자료

### 마. 종합보고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외관조사망도 포함, 사진첩 포함)	3부
CD	3SET

여수시 공고 제2023-1800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3. 1. 1.)」에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3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관련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3.

여 수 시 장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3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시행기관 : 여수시

다. 용역 주요내용

1) 현 황(3구역, 10개소)

				옹벽현황		
연번	법정동	단지명	구조	최고높이(m)	총길이(m)	구간수
1	학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철근콘크리트,	9	1115	19
	' 0	23 1 12 1 11 1	보강토옹벽		1110	
2	· 안산동	모아미래도아파트	철근콘크리트,	7	325	4
	યે પૈર્ક	고아티네고아파트	보강토옹벽	/	323	
3		소호주공아파트	철근콘크리트,	6	260	3
3	소호동		보강토옹벽			
4		소호금호아파트	철근콘크리트	10	1100	25
5	신기동	신화아파트	보강토옹벽	7	500	5
6	선원동	남양아파트	철근콘크리트	5	300	5
7		아주타운아파트	보강토옹벽	7	150	3
8		신동아아파트	철근콘크리트	7	260	3
9	봉계동	로얄골드빌아파트	철근콘크리트	5	1140	18
10	10	미화스트베이피트	철근콘크리트,	0	420	5
10		대광오투빌아파트	보강토옹벽	8	430	

※ 과업대상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2)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 역 비 : 금177,24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바. 입찰예정시기 : 2023년 6월 중(PO심사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 1) ~ 3)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전 진단전문기관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교량및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1)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23. 6. 19.(월) 18:00(12시~13시 접수 불가) (※ 근무시간에만 가능하며, 우편 또는 탁송에 의한 제출은 불가)
  - 2)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여수시청 1층 건축과
  - 3) 제출서류
    - 가)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나) 그 외 등록에 필요한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탁송접수 불가)**
  - 5.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평가기준 포함) 교부 :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 (http://www.g2b.go.kr)

#### 3.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 및 가격입찰 대상자 통보

- 가.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별표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0호 (2023.3.13.)에 따라 고시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2개사미만 업체가 참가할 경우 재공고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가 10개사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0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나.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이 90점 이상인 업체가 10개사 이상인 경우 상위 10개 업체까지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단, 10위가 동점인 경우 모두 선정)
-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

다.(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 낙찰자 결정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 12. 23.)」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2)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낙찰 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3)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4) 적격심사 기준
  - 배점한도(100점) = 용역수행능력평점(38점, 지역업체참여도 점수 합산하여 평가)+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1.0점)
  - ※ 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3점)하여 평가
  - ※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

#### 5. 입찰참가제한 및 위배 시 입찰보증금 국고 회수, 입찰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해당관리주체에 소속 되어 있거나 해당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마.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 6. 기타사항

-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이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증명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나. 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 으로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라.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마. 여수시의 사정에 따라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업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061-659-4094), 입찰공고,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청 회계과(☎061-659-3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3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업체 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2023. 6.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공동주택 옹벽(3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시행기관 : 여수시

다. 용역 주요내용

1) 현 황

#### ○ 3구역(10개소)

			옹벽현황			
연번	법정동	단지명	구조	최고높이 (m)	총길이 (m)	구간수
1	학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보강토옹벽	9	1115	19
2	안산동	모아미래도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보강토옹벽	7	325	4
3	소호동	소호주공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보강토옹벽	6	260	3
4		소호금호아파트	철근콘크리트	10	1100	25
5	신기동	신화아파트	보강토옹벽	7	500	5
6	선원동	남양아파트	철근콘크리트	5	300	5
7		아주타운아파트	보강토옹벽	7	150	3
8		신동아아파트	철근콘크리트	7	260	3
9	봉계동	로얄골드빌아파트	철근콘크리트	5	1140	18
10		대광오투빌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보강토옹벽	8	430	5

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 역 비 : 금177,24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바. 입찰예정시기 : 2023년 6월 중(PQ심사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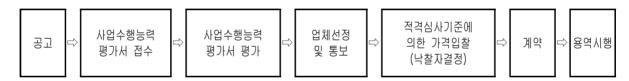
#### 2. 참가자격 : 가 ~ 다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 전진단전문기관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교량및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3. 입찰 참가자격 선정방법

- 가. 제출된 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0호 (2023.3.13.)에 따라 고시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2 개사 미만 업체가 참가할 경우 재공고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가 10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0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나.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이 90점** 이상인 업체가 10개사 이상인 경우 상위 10개 업체까지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단, 10위가 동점인 경우 모두 선정)
-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 라. 용역업체 선정절차



#### 4. 용역 참가신청서 및 용역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23. 6. 19.(월) 18:00(12시~13시 접수 불가) (※ 근무시간에만 가능하며, 우편 또는 탁송에 의한 제출은 불가)
-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여수시청 건축과
- 다. 제출서류
  - 1)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2) 그 외 등록에 필요한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라.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탁송접수 불가)**

#### 5.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일체의 변경, 수정, 추가 자료를 받지 아니함)

- 나. 모든 증빙자료는 관련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본을 첨부할 경우 "원본대조필" (회사 인감날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다. 참여기술인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 관리 수탁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타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료와 제출된 자료가 상이하거나, 필요한 서류나 실적을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증빙서류는 항목별로 시작 페이지에 색 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실격처리
  - 2) 신청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와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과 일련번호 등으로 표시
- 바.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아. 평가기준에서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 자. 본 안내평가서와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여수시 건축과(공동주택관리팀 담당자 조만호 🏗 061-659-40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6. 평가방법

#### 가. 평가방식

1)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 2) 용역수행 참가 신청업체가 작성한 평가신청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 나. 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합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범위
  -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	점	
총 계				100	
	소 계		45		
		• Uo Пі			
	     책임기술인	• 경 력	8	18	
	¬ㅁ기른	• 용역수행실적(건수)	5		
		• 용역수행실적(금액)			
참여기술인		• Ho II			
(45)	브아병 채이기수이	• 경 력	6	18	
	표어된 학교기원인	• 용역수행실적(건수)		10	
		• 용역수행실적(금액)	5		
	분야별 참여기술인	• ОП ПП	2		
		• 경 ਰ	3	9	
		• 유사용역실적(건수)			
유사용역	소 계			5	
수행실적	 	• 용역수행 건수		2	
(25)		• 용역수행 금액	13	3	
	소 계		10	0	
신용도	분야별 책임기술인 - 용역수행실적(건수) - 용역수행실적(금액) - 등 급 - 경 력 - 유사용역실적(건수) - 유사용역실적(건수) - 유사용역실적(건수) - 유명역 전수 - 유사용역실적(건수) - 용역수행 건수 - 용역수행 금액 - 용역수행 금액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대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보실적 - 한실적 - 함용 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의 활용 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의 활용 실적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10)		• 용역업자, 참여건설기술인	3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3	3	
	소 계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 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활용 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의 활용 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 평균 비율	8	}	
어모조원드	소 계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		0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ŀ	

####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비고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 ~ 0.3	

※ 단, 1), 2)항 점수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 최대 100점까지 인정함.

#### 7.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 【45점】(공통분야)

-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총 3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해당 기술자격증, 학력인정서,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수료증,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 인감날인)

#### 1) 사업 책임기술인 : (18점)

#### 가) 등급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고급기술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합니다.(동법 시행령 별표5 2번에서 규정한 자격기준에 준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교육 (토목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당해용역 수행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나) 경력평가(8점)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점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 전문분야 5년, 전문분야 외 10년일 경우 평가점수 : 5년 + 6.9년 = 11.9년으로 8점-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4.8점에 해당하는 최대 6.9년까지 인정

#### 다) 실적(건수) 평가(5점)

-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토목분야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 점

구분	14건 이상	14건 미만 ~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 단. 0건은 0점 처리 함.
- ※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평가점수 : 5건 + 7.9건 = 12.9건으로 4.5점
  -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7.9건까지 인정

#### 라) 실적(금액) 평가(5점)

#### - 배 점

구분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 단. 0원은 0점 처리 함.
- ※ 전문분야 5억, 전문분야 외 10억 일 경우 평가점수 : 5억 + 3.9억 = 8.9억으로 5점
  -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3.99억까지 인정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점)

#### 가) 등급평가(2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교육 (토목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합니다.
- 배 점

분 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	
토 목 분 야		2.0			

#### 나) 경력평가(6점)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 점

구분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 전문분야 5년, 전문분야 외 10년 일 경우 평가점수 : 5년 + 3.9년 = 8.9년으로 5점
  -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3.6점에 해당하는 최대 3.9년까지 인정함

#### 다) 실적(건수) 평가(5점)

-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 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 점

구분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단, 0건은 0점 처리 함.

\*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평가점수 : 5건 + 4.9건 = 9.9건 으로 4.5점-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4.9건까지 인정함

#### 라) 실적(금액) 평가(5점)

구분	5억원이상	5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 단. 0원은 0점 처리 함.
- \* 전문분야 5억, 전문분야 외 8억 일 경우 평가점수 : 5억 + 3.49년 = 8.49억으로 5점-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3.49년까지 인정함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점)

#### 가) 등급평가(2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별표1]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교육 (토목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합니다.

#### - 배 점

분 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
토 목 분 야		2	.0	

#### 나) 경력평가(3점)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 점

구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 전문분야 3년, 전문분야 외 8년 일 경우 평가점수 : 3년 + 1.9년 = 4.9년으로 2.7점-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1.8점에 해당하는 최대 1.9년까지 인정함

#### 다) 실적평가(4점)

-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토목분야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수리시설, 항만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 6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배 점

구분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4.0	3.6	3.2	2.8	2.4

- ※ 단. 0건은 0점 처리 함.
- ※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6건 일 경우 평가점수 : 5건 + 1.9건 = 6.9건으로 3.6점
  - 전문분야외 배점 60%인 2.4점에 해당하는 최대 1.9건까지 인정함

#### 나. 참여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25점】

#### 1) 기 준

- 가) 유사용역사업 인정대상사업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에 한합니다.
-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합니다.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다) 수행실적은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
- 라)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 표기)
- 마)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한 용역은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바) 유사용역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실적금액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 2) 배 점

#### 가) 실적건수(12점)

구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12.0	10.8	9.6	8.4	7.2

※ 단. 0건은 0점 처리 함.

#### 나) 실적금액(13점)

구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수	13.0	11.7	10.4	9.1	7.8

※ 단, 0원은 0점 처리 함.

#### 다. 신용도【10점】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 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최근 1년간(처분일 기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합니다.
- 2)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3점)
  - 가) 용역업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합니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나) 참여기술인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합니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3) 재정상태(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합니다.
-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가능합니다.
-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0 ō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활용한 토목분야, 건축분야
- 1) 개발실적(1점)
  -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합니다.

① 건설신기술: 0.5점 / 건당

② 특 허: 0.3점 / 건당

나)「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합니다.

경과기간	34712 02 112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다)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합니다.
- 라) 위 가)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합니다.

#### 2) 활용실적(1점)

-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합니다
- 나)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분야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합니다.
- 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① 건설신기술: 0.5점 / 건당

② 특 허: 0.3점 / 건당

- 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 마)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합니다.

- 건설신기술 및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50건 이상	50건 미만 ~ 20건 이상	20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1건 이상			
실적금액	7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 0.5억원 이상			

- ※ 위 사용실적건수와 사용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주1) 건설신기술의 사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사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함(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주2) 특허의 사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사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함 (한국발명진흥회)

#### 3) 투자실적(8점)

-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함.)
-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다)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

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구 분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마. 업무중첩도【10점】

- 1) 사업 책임기술인(6점)
  - 가)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가)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 분	구 분 12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8. 가점 세부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ul> <li>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li> <li>- 1% 이상 : 0.1점</li> <li>- 2% 이상 : 0.2점</li> <li>- 3% 이상 : 0.3점</li> <li>*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li> <li>*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li> <li>*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li> <li>•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li> <li>•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li> </ul>

#### 9.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 2) 사업수행능력 평가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라) 인감증명서(법인 포함),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 나. 서류 작성 방법
  - 1) 페이지 수 : 제한없음
  - 2) 인쇄 및 제본
    -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6mm)
    - 나) 재 질 : 백상지(80g/㎡)
    -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 라) 제본방법 : 무선 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 마) 제본순서
      -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서식)
      - ② 목 차
      - ③ 용역참여 신청서(서식1)
      - ④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식2)
      - ⑤ 참여회사의 일반현황(서식3)
      - ⑥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 ⑦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서식4)
      - ⑧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서식5)
      - ⑨ 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 ⑩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 ⑪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 ⑫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6)
      - ③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서식7)
      - (4)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서식8)
      - 15 재정상태 건실도(서식9)
      - 16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서식10)
      - ⑪ 투자실적(서식11)
      - 18 업무의 중첩도(서식12)
      - (19) 교육 이수 실적(서식13)
      - ②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서식14)
      - ②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현황)(서식15)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서식16)

-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4) 기타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함.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합니다.
- 다)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자료이어야 합니다.
-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 및 지침

2023. 5.



(표지서식)

접수번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3구역) 정밀안전점검 】

2023. . .(제출일)

업 체 명

### 【서식 1】

# 정밀안전점검 용역 참여 신청서

수 신: 여수시장

조 : 건축과장

제출일자 : 2023. . .

제 목 : 정밀안전점검 용역참여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3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참여하고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사본 1부)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참여기술인 정밀안전점검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 1부.

7.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각 1부. 끝.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접수번호

#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용 역 명 :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3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3. 회 사 명 :

4. 접 수 자 : 직 성명 : (인)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여 수 시 장(관인생략)

### 【서식 2】

접수번호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본인은 OOOO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용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고자 별첨과 같이 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발주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3. . .

# 여수시장 귀하

# 【서식 3】

#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중 <b>)</b> 가 며	대 표 자	
회 사 명	연 락 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회사설립 연 도		

2023. . .

작성자 : 직 성명 (인)

여수시장 귀하

### 【서식 4】

#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

구 분 성명 /	서 대	생년월일	학력	기술인		자격증		해당 분야	
	갱선펄릴	(학위)	(학위) 등급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군아 경력		
사업	책임 울 자								
분야 기 (	:책임 울 자								
분야 기 (	참여 울 자								

- 주) 1.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2.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 3. 참여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교육(토목분야)"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단, 정밀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 처리함)
  - 4.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5. 근무경력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 6. 참여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서식 5】

#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3	소속			직위		자?	ᅾ증	종 류 취 득 일 등록번호	:			
주민 H 번 3	등록 호				최종 <sup>*</sup> 학	학교 위)		전	아		근무	경력	Ļ	친 월
				·		0 7	경 력 사	항						
7	- 무ァ	기 간			근	무 ネ	;}	,	직	위	담	당	업	무

### 나. 해당분야 경력(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평가서 및 엑셀로 작성하여 USB 제출

연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실참여일수)
1	예) 00정밀안전점검	여수시청	15.01.01-15.6.30 (경력증명서일)	30
2	허위로 기재하	යු을 경우 평기	나 대상에서 제외	

## 다. 해당분야 실적(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참여기간	발주처	비고
	허위로 기재하9	යු을 경우 평				
합계	건	천원				

- 주)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토목분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말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 2.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3. 사업책임기술인·분야책임기술인·분야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4.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증명서 또는 발주처발행 참여기술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 5.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식 6】

#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고
합계						

- 주) 1. 유사용역사업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5년(공고일 현재)내 토목분야 정밀안전 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2022.12.23.)〉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야여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한다.
  -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한다.
  -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원본 대조필'날인)
  - 4. 증명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 【서식 7】

# 점검 ·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업체	용 역 명	ਕ ਦੀ ਹੀ ਹੀ.ਸ਼ੀ	평 가	내 용	비고
(대표자)	8 7 7	조치기관명	평가결과	사 유	

- 주) 1.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미흡' 및 '불량' 및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내용을 기재한다.
  - 2.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 【서식 8】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고

##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건	최근 1년간 참여책임기술인이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 야	성	玛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또는 자격 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 2.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인은 "해당 사항 없음" 표시
  -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 【서식 9】

# 재정상태 건실도

#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립년도	
자 본 금	

### 2. 재정상태 건실도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해당등급					
(O)					
점수	3.0	2.7	2.4	2.1	0

-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 점으로 평가한다.

### 【서식 10】

# 기술개발 및 활용 실적

### 가.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게바맵치	개발명칭 지정권자 지정일	만료일	활 용 실 적		비고	
시장반오	개월경정	시경전시	시생 된	진표된	건수	금액(억원)	P1-14

###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번호	개발명칭	최초출원인	출원일	만료일	활 용	· 실 적	비고
· 중국민모	/ [ 현 경 경	' 의 소 골 전 인	글 건 근	진프린	건수	금액(억원)	P1-14

- 주) 1. 기술개발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진단관련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기재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 2.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 지정서·활용실적증명서, 특허는 특허증· 등록원부·최초출원인 확인서, 활용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3. 자체개발만 작성하며 출원중인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제외한다.
  - 4.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5.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활용한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 투 자 실 적

(단위: 백만원)

구	<b></b> 世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용역부문	연구개발비				
기술개발	교육훈련비				
투자금액	기 타				
소	계 (a)				
건설부문	총매출액 (b)				
투 <i>7</i>	<b>아비율</b>				3개년평균치로
(%=@)	(b) × 100)				기재

- 주) 1.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조세감면 규제법상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및 "건설 기술진흥법령조에 따라 신고 또는 지정된 사항"에 한하여 증빙 서류를 첨부 한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사본)
  - 2.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3.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 으로 인정한다.
  - 4.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중 사무실 임대수입, 제조업수입을 제외하고 기재한다.
    - (건설부문은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기술 관련분야를 총칭하며, 감리와 공사도 포함 하다.)
  - 5. 2020년, 2021년, 2022년 결산보고서 사본첨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6.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하고 건설부분 총매출액은 기입
  - 7.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활용한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서식 12】

# 업무의 중첩도

# □ 사업책임기술인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刊	고

## □ 분야책임기술인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 주) 1.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별로 작성한다.
  - 2.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며, 허위기재 시에는 임의로 처리한다.
  -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 【서식 13】

# 교육이수 실적

### □ 참여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등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함(단,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자 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처리 되고,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처리 함)

# 【서식 14】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집계 현황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평가 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7	4)	45		
		소 계	18		
	V) 6] 7] 6]	등 급	_	적격	
	사업책임 기 술 자	경 력	8		
참	, , ,	실적건수	5		
여		실적금액	5		
		소 계	18		
기	분야책임	등 급	2		
술	군아색임 기 술 자	경 력	6		
		실적건수	5		
자		실적금액	5		
		소 계	9		
	분야참여	등 급	2		
	기 술 자	경 력	3		
		실적건수	4		
유사용역		네 	25		
수행실적	건	수 	12		
	금	핵	13		
		네 · · · · · · · · · · · · · · · · · · ·	10		
신용도		결과 평가결과	4		
		한, 업무정지	3		
		H 건실도	3		
기술개발		4) 	10		
및		·실적 	1		
투자실적		실적 	1		
		·실적 	8		
업 무		에 이기소이	10		
중첩도		임기술인 	6		
7] 7-]		임기술인 	4		고성기스이 지그 ㅋㅎㅇ . ~
가 점	선열기풀인	] 신규고용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 2. 평가내역

11:	 키가항목		세브	부내용	업체명	지분	을(%)	업체명	지분율(%)	비고
				실적				26.2.2.2		미끄
	구	분	성	명	등 급	경 릭	<u>력   실</u> 7	덕(건수)	실적(금액)	
	책임기	[]술인				년	월 -	건	<u>억원</u>	
참 여	분야별 ① 책임					년	월 -	 건	<u>억원</u>	
기술인	기술인	2				년	월 -	 건	억원	
	분야별	1)				년	월 -	<u>-</u> 건	억원	
	참여 기술인	2				년	월 -	<u>고</u> 건	억원	
유사용역	 업체	 신저	건 금	수				<u></u>	건	
수행실적			금	액				_	<u>억원</u>	
	점검. 실시 평가	신난 결과 결과	평기	<b> </b> 결과	미흡 : 매우불량	건 : 7	/ 건	불	량: 건	
		입찰참가제한 지정기간 <u>월</u>								
신		구 분 책임기술인				성 명			개월 수 <u>월</u>	
			분야별	<u>기월인</u> ①						
<u> </u>	업무정	[지] 드	책임 기술인					_	<u>월</u>	
	нго	810.10		2				_	<u>월</u>	
도			분야별 참여	1				_	<u>월</u>	
			기술인	2	<u></u> 월					
			정상태 도(등급)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구 분			건명		경과기간		
	개발	시저	건설	신기술					<u>건</u> 건	
	/미리	'큰'円	-	-1					<u> 건</u> 건	
			특	허		1			<u>건</u>	
기술개발			구	분	건명	실적건수	실적금액	가중치		
및	활용	실적	건설	신기술					<u>건</u> _건	
투자실적	20		특	하					<u>건</u>	
' ' - '					1=1:1-	0=1:3-	0=11-1-	<b>→11</b>	<u>건</u>	
				<u>분</u> 기술개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실적비율	
	투자	실적		T월/TI 자액	억원	<u>억원</u>	억원	. 억운	일 %	
			건설	설부문 개출액	<u>억원</u>	<u>억원</u>	억원	억운		
	구	분	성	명	건 수		2	복기간		
업 무	책임기 분야별								<u>월</u>	
중첩도	군아일 책임	1)							<u>월</u>	
	기술인	2				월				
가 점	건설기 신규고		평기	· 가결과		건설기술인	l 신규고-	용율	<u>%</u>	

<sup>※</sup> 평가점수 산출근거 및 평가내역을 반드시 작성바랍니다.

## 【서식 15】

#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현황)

구 분 (참여회사)	최근1년간 신규고용인원①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②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①/②×100)	用	ュ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2023. . .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 여수시장 귀하

# 【서식 16】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ㅇ 용역명: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3.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여수시장 귀하

# 남해안 게점도시 미창여수



# - 여수시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3구역)-

# 정밀안전점검 용역수행 과업지시서

2023. 5.

# 목 차

# I.총 칙

- 1.1 과업의 명칭
- 1.2 과업의 목적
- 1.3 과업의 개요
- 1.4 적용 법규

# Ⅱ.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2.3 자료수집 및 분석
- 2.4 현장조사 및 시험
-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2.7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 2.8 유지관리 방안제시
- 2.9 보고서 작성

### [. 총칙

###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여수시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3구역)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 칭하고, 여수시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하다.

###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공동주택 단지 내 급경사지(옹벽)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 점검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3 과업의 개요

### 가. 시설물의 개요

(1) 3구역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 10개소

				옹벽현황		
연번	연번 법정동	단지명	구조	최고높이 (m)	총길이 (m)	구간수
1	학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보강토옹벽	9	1115	19
2	안산동	모아미래도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보강토옹벽	7	325	4
3	소호동	소호주공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보강토옹벽	6	260	3
4		소호금호아파트	철근콘크리트	10	1100	25
5	신기동	신화아파트	보강토옹벽	7	500	5
6	선원동	남양아파트	철근콘크리트	5	300	5
7		아주타운아파트	보강토옹벽	7	150	3
8		신동아아파트	철근콘크리트	7	260	3
9	봉계동	로얄골드빌아파트	철근콘크리트	5	1140	18
10		대광오투빌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보강토옹벽	8	430	5

### (2)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시설물의 범위	정밀안전점검	비고
		지반, 기초부	0	
옹벽	주요 부재	전면부	0	
	, "	배수시설	0	

- 나. 용 역 비 : 금177,2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다.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 (1) 자료수집 및 분석
  - (2) 현장조사 및 시험
  -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4)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 (5) 보고서 작성
  -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라.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다)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 라)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마. 발주기관 및 연락처
  - (1) 발주기관 : 여수시 건축과(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 (2) 연 락 처 : 061-659-4094

## 1.4 적용 법규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 라. 기타 관련법규

### Ⅱ.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한다.
  -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2)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3)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4)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 나.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가. 과업수행방법

-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 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 2.3 자료수집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 나.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 다. 유지관리 자료수집(시설물 관리대장) 및 담당자 면담

## 2.4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시설물의 외관조사

-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
  -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 ④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 나. 시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코어채취 등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시험량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시행 하여야 한다.

###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가.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 나. 손상 및 결함 원인 분석

### 2.6 상태 평가

-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 나. 비파괴현장시험 결과분석
- 다. 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
- 라.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2.7.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 가. 과업 수행 중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유지 관리개선방안을 제시
- 나. 구조물의 결함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보수·보강대책을 제시 (외관 조사망도에 결함위치를 표기하면서 기둥번호도 병행 표기)
- 다. 염해, 탄산화, 침출 등 각종 열화 평가 결과 대책 제시
- 라.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등 각종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 제시

- 마. 내구성능 평가 결과 대책 제시
- 바. 보수·보강 대상별로 보수시기, 우선순위 및 단기, 중기, 장기 보수·보 강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사. 보수·보강방안으로 제시된 공법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한다.
- 아. 보수·보강에 제시된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 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자. 보수·보강 제시 시 유형별, 조건별 특성에 맞는 적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 집중적인 균열, 누수가 있는 곳은 원인과 대책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유지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2.8. 유지관리 방안제시

- 가.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상태등급 평 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 지관리 방향 등을 제시
- 나.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적합한 유지관리 지침 서를 별도의 책자로 작성 제출
- 다.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 라.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습 또는 수집자료 직접제시 및 활용방 안 제시
- 마. 차기 안전점검 시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시

## 2.9. 보고서 작성(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가.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 나.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 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 다.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라.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 마.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하다.
- 바.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 설계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 아.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자. 중가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 라. 부록작성

- (1) 외관조사망도
- (2)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3) 상태평가 자료
- (4)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5)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6)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7) 사전조사 자료 일체

(8) 기타 참고 자료

# 마. 종합보고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외관조사망도 포함, 사진첩 포함)	3부
CD	3SET

### 여수시 공고 제2023-1801호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오천동 105번지 건축신고사항과 관련하여「건축법」제2조제 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 정·공고합니다.

### 2023. 6. 14.

# 여 수 시 장

1. 위 치 : 오천동 105번지

2. 도로면적 : 10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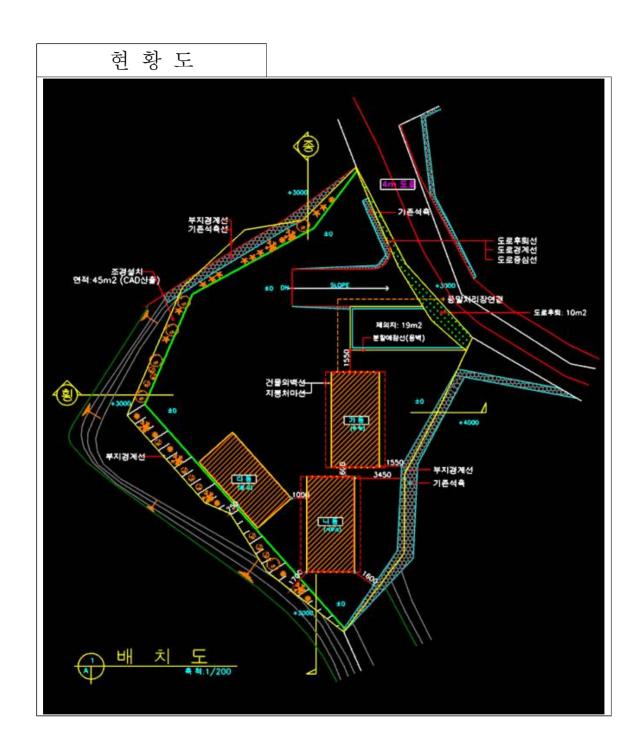
3. 도로길이 : 9.09m

4. 도 로 폭 : 1.1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7 11	) _ll _l	<b>→</b> ] 11]	→) □	면 2	적(m²)	, 11 - J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지정면적	비고
	계			433	10	
	오천동	105	대	433	10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 여수시 공고 제2023-1803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15.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신월동 19-2번지 일원

###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3-1149)사업

나. 명 칭: 월호동 주민자치센터 아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소방도로)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가. 면 적: 1009m² → 1,012m² (증 3m²)

나. 규 모: L=160m, B=6~8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여수시장(도로과장)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시청로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20. 4.23. ~ 202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규	모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del>용</del>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1149	6~8	국지 도로	160	중로2-24 신월동 32-1	국동 1075	일반 도로		여고 제2019-311호 (2019.10.24.)	
변경	소로	3	1149	6~8	국지 도로	160	중로2-24 신월동 32-1	국동 1075	일반 도로		여고 제2019-311호 (2019.10.24.)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149		· 도시계획도로 선형 일부 변경 - 면적 <mark>기정 1,009㎡</mark> 변경 1,012㎡ (증 3㎡)	· 소방도로 개설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의 불일치 구간을 정비하여 현황 도로를 반영하기 위한 도로의 선형 변경

- 8. 공람기간: 2023. 6.15. ~ 2022. 6.29.(14일간)
- 9. 공람장소: 여수시 도시계획과
-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도로과(☎061-659-4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 지목과 소유권 권리의 명세서 (1,8)

	.))				면	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매용
1	기정	신월동	19–5	답	75	75	대한예수 교장로회 여수성문 교회	에스시 보사도 27Q-1N			
	변경	신월동	19–5	답	75	75	$\mathbb{R}^{0}$	여수시			
2	기정	신월동	25-6	대	48	48	윤학모	충남천안시서북구한들3로35-26 , 211동1103호(백석2차아파트)	농협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천안시지부)	근저당권
	변경	신월동	25-6	대	48	48	공	여수시			
3	기정	신월동	25-7	대	27	27	국	기획재정부			
	변경	신월동	25-7	대	27	27	줘0	여수시			
4	기정	신월동	25-8	전	21	21	문혜경	여수시 국동 686-3			
	변경	신월동	25-8	전	21	21	F10	여수시			
5	기정	신월동	25-9	대	1	1	김동수	여수시 국동 1075-1			
	변경	신월동	25-9	대	1	1	F10	여수시			
6	기정	신월동	26-3	답	158	158	진일순	여수시 신월동 26			
	변경	신월동	26-3	답	158	158	F10	여수시			
7	기정	신월동	27-8	도	22	22	심남섭	여수시신월로561-8, 9동905호(신월동,금호아파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근저당권
'	변경	신월동	27-8	도	22	22	구0	여수시			
									장시환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03	근저당권
8	기정	신월동	27-9	답	37	37	황미자		다압농협 협동조합		근저당권
0									다압농협 협동조합		지상권
	변경	신월동	27-9	답	37	37	줘0	여수시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 지목과 소유권 권리의 명세서 (2,8)

	n) = i				면	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매 <del>용</del>
9	기정	신월동	27-10	장	4	4	심남섭	여수시신월로561-8, 9동905호(신월동,금호아파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근저당권
	변경	신월동	27-10	장	4	4	FI0	여수시			
									장시환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03	근저당권
	기정	신월동	27-11	답	80	80	황미자	여수시신월로561-8, 17동1401호(신월동,금호아파트 )	다압농협 협동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항동3길 11	근저당권
10								,	다압농협 협동조합		지상권
	변경	신월동	27-11	답	80	80	줘0	여수시			
									장시환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03	근저당권
11	기정 11	신월동	27-12	답	104	104	황미자	17동1401호(신월동.금호아파트)	다압농협 협동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항동3길 11	근저당권
''								,	다압농협 협동조합		지상권
	변경	신월동	27-12	답	104	104	편0	여수시			
12	기정	신월동	27-13	대	246	246	심남섭	여수시신월로561-8, 9동905호(신월동,금호아파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여수지점)	근저당권
12	변경	신월동	27-13	대	246	246	70	여수시			
10	기정	신월동	31-6	도	3	3	공	여수시			
13	변경	신월동	31-6	도	3	3	공	여수시			
14	기정	신월동	31-7	대	1	1	공	여수시			
14	변경	신월동	31-7	대	1	1	광	여수시			
15	신규	신월동	32-1	전	3	3	F0	여수시			
	기정	시원도	32-0	전	20	20	심남섭	여수시신월로561-8, 9동905호(신월동,금호아파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16	71Ö		신월동 32-9 R				박인규	중앙동 385-2	하나은행	(을지로2가)(여수지점)	디시당전
	변경	신월동	32-9	전	20	20	줘0	여수시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 지목과 소유권 권리의 명세서 (3,B)

	.) <del></del> ]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매용
	기정	신월동	32-10	H	1	1	장지원	여수시국동1010			
17	변경	신월동	32-10	도	1	1	공	주공아파트103동108호 여수시			
	100		32-10	<u> </u>	ı	'	홍지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34 상록수아파트 209-501	국제 종합기계 주식회사	51/-/	근저당권
							유영모	1081	1 1 - 1 - 1		
							정종심	1075			
							김경순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3길 18-21(신월동)			
							국	국토교통부			
18	기정	신월동	1075–13	대	26	26	김연곤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41, 105동 402호(국동, 구봉아파트)			
							윤학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35-23, 211동 1103호			
							김경순	(백석2차아이파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3길 18-21(신월동)			
							전선종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6길 36, 206동 1501호(소호동, 주은금호아파트)			
	변경	신월동	1075–13	대	26	26	공	여수시			
							홍지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34 상록수아파트 209-501	국제 종합기계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517-7	근저당권
							유영모	1081			
							정종심	1075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3길			
							김경순 국	18-21(신월동) 국토교통부			
	기정	신월동	1075–14	대	1	1	김연곤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41, 105동 402호(국동,			
19							윤학모	구봉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35-23, 211동 1103호			
							김경순	(백석2차아이파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3길 18-21(신월동)			
							전선종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6길 36, 206동 1501호(소호동, 주은금호아파트)			
	변경	신월동	1075–14	대	1	1	공	여수시			
20	기정	자	1093-8	장	51	51	주식회사 부광	여수시 어항단지로 9(국동)	주식회사 한빛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로 19	근저당권 근저당권
									부산통상	(대평동1가)	느시하건
	변경 기정		1093-8	장  대	51 83	51 83	공 심남섭	여수시신월로561-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21								9동905호(신월동,금호아파트)	하나은행	(을지로2가)(여수지점)	
	변경	국동	1093-9	대	83	83	굉	여수시			